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5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2. 5. 17(목), 13:00 ~ 19: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김경표, 김봉건, 박경립, 박언곤, 이상필,  
장석하, 정명섭, 정혜린(진명), 최성은, 홍승재  
(이상 10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심의사항】		
1	서울 동관왕묘 주변 보도정비 및 난간설치	공개
2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보존처리(세척)	공개
3	파주 용미리 마에이불입상 주변 일주문 건립	공개
4	파주 용미리 마에이불입상 주변 용암사 진입로 포장	공개
5	파주 용미리 마에이불입상 주변 대종사(사찰) 건립	공개
6	안성 석남사 영산전 주변 화장실 신축	공개
7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8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	공개
9	강화 정수사 법당 주변 창고 신축	공개
10	고흥 능가사 대웅전 주변 관풍료 개축(3차)	공개
11	여수 진남관 주변 보도육교 설치(허가사항 변경)	공개
12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	공개
13	영암 도갑사 해탈문 주변 불교용품 판매점 신축	공개
14	고창 선운사 대웅전 주변 산사체험관 신축	공개
15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탁본	공개
16	영양 현리 삼층석탑 주변 마을공동체험장 증축	공개
17	구미 도리사 석탑 주변 적멸보궁 진입계단 문수, 보현보살 설치	공개
18	영주 가흥동 마에여래삼존상 및 여래좌상 주변 전력설비 신설	공개
19	경주 마동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20	경주 마동 삼층석탑 주변 요사채 신축(2차)	공개
21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가스배관 매설(2차)	공개
22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2차)	공개
23	예천 용문사 대장전 주변 화장실 이건(3차)	공개
24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 3차)	공개
25	완주 화암사 극락전 등 2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공개
26	논산 노강서원 강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공개
27	예산 삼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공개
28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주변 템플스테이 건물 신축	공개

29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주변 협문 철거 및 신축	공개
30	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주변 농촌생활시설 정비	공개
31	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주변 명상의 길 조성	공개
32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주변 단독주택 2동 신축(4차)	공개
33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주변 창고신축	공개
34	홍천물결리석조여래좌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35	홍천물결리석조여래좌상 주변 도로정비	공개
<b>【검토사항】</b>		
36	덕수궁 석어당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37	덕수궁 즉조당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38	덕수궁 정관헌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39	창덕궁 연경당 일곽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40	창덕궁 영화당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41	창덕궁 주합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42	부산 장안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43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기본설계 검토	공개
<b>【보고사항】</b>		
44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 보고	공개
45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구조안전진단 결과 보고	공개
46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해체보수 계획 보고	공개
47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상시계측시스템 설치계획 보고	공개
48	창덕궁 부용정 보수 공사 계획 보고	공개
49	<p>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문묘 및 성균관의 석전대제 상시공연</li> <li>-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주변 보건진료소 창고 증축</li> <li>- 장흥 보림사 남·북 삼층석탑 및 석등 주변 화장실 보수</li> <li>-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주변 요사채 신축(허가사항 변경)</li> <li>- 경주향교 대성전 주변 외래수종 제거 및 명륜당 마루보수</li> <li>- 경주 석굴암 석굴 주변 낙석방지책 설치</li> <li>-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li> <li>-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주변 종각 신축(허가사항 변경)</li> <li>- 부산 범어사 대웅전 주변 등산로 정비</li> </ul>	공개

##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2-05-001

### 1. 서울 동관왕묘 주변 보도정비 및 난간설치

####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 「서울 동관왕묘」 주변 보도를 정비하고자 “국가 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 「서울 동관왕묘」 주변 보도정비(난간설치 등)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종로구청장
- (2) 대상문화재 : 서울 동관왕묘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승인2동 238-1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승인2동 238-1번지 외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연접
  - 사업내용 : 보도정비 및 난간 설치
    - 서울 동관왕묘 정문 앞 보도 폭 축소와 난간 설치 및 제거로 보행로 확보
    - 경계 난간 설치 : 동묘 정문 앞(B = 1.5m, L = 40m)
    - 경계 난간 제거 : 정문 맞은편(B = 2.0 ~ 2.4m, L = 54.3m)
    - 정비기간 : 2012. 5 ~ 6

**라. 지방자치단체(종로구) 의견**

- 동관왕묘의 문화재 화재예방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동관왕묘 정문 앞 보도를 정비하고 휠스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동관왕묘 외곽 전면의 기존 인도에 난간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동관왕묘 주변은 현재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들로 인해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화재 위험이 있는 상황이므로 동관왕묘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2.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보존처리(세척)

###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을 보존처리(세척)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종로구 소재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을 보존처리(세척)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립중앙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 :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번지 경복궁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번지 경복궁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지광국사탑 보존처리
    - 보존처리 : 표면 오염물 제거

### 라. 지방자치단체(종로구) 의견

-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표면을 세척하여 오염물을 제거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표면 세척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지광국사탑은 현재 석재 표면의 풍화가 심하여 보존처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금번 신청은 단순 세척을 실시하고자 하나 탑의 표면 풍화상태가 심하여 세척에 의한 훼손이 우려되므로 전반적인 훼손 지도를 작성하고 훼손원인과 처리방법을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존처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보존처리 전 과정은 수리보고서에 기록토록 함.

####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과 같이 시행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 3.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 일주문 건립

#### 가. 제안사항

경기 파주시 소재 보물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 용암사에 일주문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기 파주시 소재 보물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 용암사에 일주문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8,9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651-10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약 36m 이격
  - 사업내용 : 일주문 건립
    - 주칸 : 4.8m(기둥 지름 900mm, 기둥 높이 3,150mm)
    - 양식 : 내3출목, 외2출목 다포계
    - 지붕 : 겹처마, 팔작지붕
    - 높이 : 7.97m



#### 라. 지방자치단체(파주시) 의견

- 현상변경 기준안 1구역에서 용암사 일주문 건립, 본 사업은 2012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임.

####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용미리 마에이불입상 보호구역에서 약 36m 이격된 부지에 일주문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주차장에서 용암사의 초입에 해당되는 위치임.
- 현재 용암사는 일주문 없이 사찰에 출입하고 있어 일주문 신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역에 비하여 일주문의 크기가 크므로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일주문을 맞배지붕으로 계획하고, 규모를 축소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 4.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 용암사 진입로 포장

##### 가. 제안사항

경기 파주시 소재 보물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 용암사의 진입도로를 포장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기 파주시 소재 보물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 용암사의 진입도로를 포장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파주시장
- (2) 대상문화재 :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8,9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651-10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약 23m 이격
  - 사업내용 : 진입도로 포장
    - 규모 : 길이 88.5m, 폭 5.2m ~ 6.0m
    - 포장재료 : 잡석다짐(두께 200mm) 위 황토포장(두께 200mm), 화강석 경계석 설치 등

##### 라. 지방자치단체(파주시) 의견

- 용암사 진입로를 기존 흙포장에서 황토포장으로 변경하는 것임.

####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이 자리 잡은 용암사의 진입로를 황토포장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부분적으로 포장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기존 지형의 변화 없이 포장하는 사항이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경계석은 자연석으로 변경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8명, 원안가결 1명

## 5.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 대중사(사찰) 건립

### 가. 제안사항

경기 파주시 소재 보물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에 대중사(사찰)를 건립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기 파주시 소재 보물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에 대중사라는 사찰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승불교 금강종)
- (2) 대상문화재 :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8,9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 7-2번지 외 5필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문화재 보호구역에 인접
  - 사업내용 : 사찰건립(대웅전 등 8동 신축)
    - 부지면적 : 11,337m<sup>2</sup>
    - 건축면적 : 866.12m<sup>2</sup>
    - 건립내용 : 대웅전 등 8동 신축

	면적	구조	양식	높이	비고
대웅전	106.74m <sup>2</sup>	철근콘크리트, 한식기와 지붕	정면 3칸, 측면 2칸	8.3m	
산신각	65.34m <sup>2</sup>		정면 3칸, 측면 2칸	2.2m	
삼성각	41.68m <sup>2</sup>		정면 3칸, 측면 2칸	7.2m	
요사채	129.6m <sup>2</sup>		정면 3칸, 측면 2칸	6.3m	
요사채	129.6m <sup>2</sup>		정면 3칸, 측면 2칸	6.3m	
공양방	45.41m <sup>2</sup>		정면 3칸, 측면 2칸	6.3m	
교육장	70.82m <sup>2</sup>		정면 3칸, 측면 2칸	6.9m	
화장실	19.44m <sup>2</sup>		정면 1칸, 측면 1칸	5.1m	

#### 라. 지방자치단체(파주시) 의견

- 현상변경 기준안 1구역에 종교시설(대종사) 8동을 신축하는 건으로, 절토가 최대 4미터 정도 발생함. 동일지번에 창고 신축 등으로 여러 번 부결된 바 있음.

####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용미리 마에이불입상 보호구역에 접한 부지에 사찰 조성을 위해 대웅전 등 8동을 신축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임야지역으로 경사지에 수목이 자라고 있는 상황임.
- 신청부지는 마에이불입상으로 올라가는 진입부에 해당되는 위치이고, 부지 조성을 위하여 지형을 많이 변형하고 있어 신청건물이 신축될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됨.

#### 바. 의결사항

- 부결
  - 신축건물이 들어설 경우 주변 지형변화 등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 6. 안성 석남사 영산전 주변 화장실 신축

### 가. 제안사항

경기 안성시 소재 보물 「안성 석남사 영산전」 주변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기 안성시 소재 보물 「안성 석남사 영산전」 주변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안성시장
- (2) 대상문화재 : 안성 석남사 영산전
  - 소재지 : 경기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508번지
  - 지정일 : 1985. 01. 0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508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화장실 신축
    - 건축면적 : 45.42㎡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한식기와 잇기
    - 외벽마감 : 하부 목재판벽마감, 상부 회벽연출
    - 건물높이 : 4.9m

#### 라. 지방자치단체(안성시) 의견

- 석남사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현대식 화장실 신축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석남사 경내 초입부에 화장실을 신축하고 기존 재래식 화장실은 창고로 사용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기존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노후되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상황임.
- 탐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고 신청건물의 규모와 형태 또한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부지가 협소하여 기존 화장실과 간섭하게 되므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배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건립위치는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 7.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경기 안성시 소재 보물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기 안성시 소재 보물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 소재지 : 경기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508번지
  - 지정일 : 1966. 02. 2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68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약 320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1,709.0m<sup>2</sup>
    - 건축면적 : 88.00m<sup>2</sup>
    - 건축구조 : 조적조, 벽체 사이딩판넬, 지붕 아스팔트싱글릿기
    - 건물높이 : 5.0m



#### 라. 지방자치단체(안성시) 의견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보전구역으로 원지형 보존에 해당하므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관련 심의가 필요함.

####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봉업사지 오층석탑의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320m, 봉업사지로부터 약 110m 이격된 위치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 주변은 전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청부지보다 약 70m 가까운 부지에 주택이 1가구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
- 신청부지는 석탑에서 거리가 멀고 농가주택인 점을 감안할 때,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청부지는 봉업사지와 가깝고 인근에 있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죽산리 삼층석탑과도 멀지 않으므로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포조사를 선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바. 의결사항

- 부결
  -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 8.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

### 가. 제안사항

인천 강화군 소재 보물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인천 강화군 소재 보물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0년에 단독주택 43동에 대한 부지조성 등에 대하여 허가 받은 사항으로 그 중 일부 건물의 규모를 변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0.09.16) : 조건부 가결
  - 진입로변의 2층 4동(2, 41, 42, 43)을 1층으로 조정하고, 진입로변의 언덕을 자연스럽게 처리한 후 수립을 조성하여 차폐하도록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외 2명
- (2) 대상문화재 :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 소재지 :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산 193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719-41번지 외 5필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7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건립

- 건립 동수 : 3동
- 동별 개요

	가동	나동	다동
지 번	719-52, 794-2번지	719-42, 797-4번지	719-41, 795번지
대지면적	526㎡	450㎡	472㎡
건축면적(연면적)	93.60㎡(152.96㎡)	93.60㎡(152.96㎡)	93.60㎡(152.96㎡)
층고 및 높이	2층, 7.5m	2층, 7.5m	2층, 7.5m

#### 라. 지방자치단체(강화군) 의견

- 주변에 2층으로 허가를 득한 것도 있어 건축행위를 하여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에서 220m에 걸쳐 자리 잡고 있는 3개의 필지에 지상1층의 단독주택 각 1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하여 기 허가된 사항으로 금번에는 1층 건물을 2층으로 변경하고자 재신청한 사안임.
- 2010년 9월 신청부지에 대한 단지조성 허가 시 문화재 주변 경관을 고려한 층수 계획이 함께 검토된 사항으로 기 허가된 층수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바. 의결사항

- 부결
  - 기 허가된 층수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 9. 강화 정수사 법당 주변 창고 신축

### 가. 제안사항

인천 강화군 소재 보물 「강화 정수사 법당」 주변에 창고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인천 강화군 소재 보물 「강화 정수사 법당」 주변에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정수사 법당
  - 소재지 : 인천 강화군 화도면 사거리 467-3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인천 강화군 화도면 사거리 산131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69.5m
  - 사업내용 : 창고 신축
    - 부지면적 : 330㎡
    - 건축면적 : 47.50㎡
    -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및 칼라아스팔트 싱글마감
    - 건물높이 : 4.2m

#### 라. 검토의견

- 본 건물은 정수사 법당 보호구역에서 약 69.5m 이격된 필지에 농가창고를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사찰 진입도로 주변이며, 임야지역으로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는 상황임.
- 신청부지는 사찰에서는 멀고 보이지 않으나 사찰로 들어가는 진입부에 접해 있는 필지이며, 동 필지에는 동일 신청인에 의해 농가창고 겸 관리사 건물이 2011년에 허가된 바 있어 신청건물이 들어설 경우 같은 필지에 여러 동의 창고건물이 난립하여 문화재 진입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 10. 고흥 능가사 대응전 주변 관풍료 개축(3차)

### 가. 제안사항

전남 고흥군 소재 보물 「고흥 능가사 대응전」 주변 관풍료를 개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전남 고흥군 소재 보물 「고흥 능가사 대응전」 주변 관풍료를 개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 ‘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2.02.16)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 ‘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2.03.16) : 부결
  - 지표차이로 건물배치가 조정이 필요함. 사찰경관에 영향이 있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고흥군수
- (2) 대상문화재 : 고흥 능가사 대응전
  - 소재지 : 전남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369번지
  - 지정일 : 2001. 02. 2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369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관풍료 개축

- 건축면적 : 56.43m<sup>2</sup>
- 건축구조 : 전통 한식목구조
- 건축양식 : 정면 3칸, 측면 2칸, 물익공, 겹처마, 5량가 맞배집
- 최고높이 : 6.56m

#### 라. 지방자치단체(고흥군) 의견

- 관풍료가 노후 불량이므로 문화재 주변경관에 부합되도록 개축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고자 함.

#### 마. 검토의견

- 신청부지는 현지조사 의견에 따라 기존 관풍료의 뒤편으로 자리 잡고 규모 또한 크지 않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붕 막새는 와구토로 변경토록 함.

#### ※ 현지조사의견('12.02.23)

- 관풍료의 신청부지는 능가사의 장기적인 가람배치를 고려할 때 적절치 않으므로 개축예정인 첨성각과 함께 기존 건물의 뒤편 부지에 요사공간을 구성하여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기와막새를 와구토로 변경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 11. 여수 진남관 주변 보도육교 설치(허가사항 변경)

### 가. 제안사항

전남 여수시 소재 국보 「여수 진남관」 주변에 보도육교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전남 여수시 소재 국보 「여수 진남관」 주변에 보도육교를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후 건립위치를 조정하고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여수시청
- (2) 대상문화재 : 여수 진남관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군자동 472번지
  - 지정일 : 2001. 04. 1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여수시 관문동 1124번지 일원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약 4m(대첩비각 : 85m)
  - 사업내용(진남관~대첩비각간 보도육교 설치 허가사항 변경)
    - 변경 사유
      - 당초 구조는 높은 형고(최단높이 1.8m, 최고높이는 3m)로 인해 내리막으로 오는 차량통행자들의 시선을 벽처럼 가리게 되며, 또한 다리 높이가 높고 길이가 길어 보행시 보행자들이 출렁거리는 느낌을 받게 되어 불안감이 형성됨. 이에 따라 육교의 위치를 조정하고자 함.



- 변경내용

구분	허가내용	변경내용
건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교(강교) L=48m, B=40m</li> <li>· 구조물공 : 기와 돌담길 조성 L=80m</li> <li>· 포 장 공 : 화강판석 포장 A=500m<sup>2</sup></li> <li>· 조 경 공 : 1식(자연석 쌓기 및 식재 등)</li> <li>· 부 대 공 : 1식(옹벽 미관공사 A=500m<sup>2</sup>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교(강교) L=38m, B=4.0m 화강석 난간 L=85m</li> <li>· 포 장 공 : 화강판석 포장 A=997m<sup>2</sup></li> <li>· 조 경 시설 : 1식(정자, 쉼터, 자연석 쌓기 및 식재, 계단 12m 등)</li> <li>· 부대공 : 1식(옹벽 미관공사 A=45m<sup>2</sup>, 교명주, 표지석, 간판이설 등)</li> </ul>
위치	진남관 정면 우측 도로	당초 허가 지역에서 남쪽으로 7m 정도 이동

라. 지방자치단체(여수시) 의견

- 국보 제304호 여수 진남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의거,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대상이므로 진달코자 함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여수시에서 일제강점기에 진남관과 대첩비각을 양분하며 개설된 일명 오사카도로(진남관 앞 도로) 위에 민족정기의 맥을 되살리는 목적으로 보도육교를 설치하고자 신청하여 기 허가된 사안으로 금번에는 교량길이 축소, 정자설치 등의 계획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기 허가된 교량은 길이가 길어 출렁임 발생 우려가 있고, 차량의 시선 차단 등 문제점이 있어 교량 길이가 축소되는 7m 남쪽으로 이동하는 사항이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량 디자인과 정자 또한 비교적 주변과 어울리도록 계획된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12.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

### 가. 제안사항

전남 강진군 소재 보물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면서 건물규모를 변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전남 강진군 소재 보물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1.10.20) : 부결
  - 2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 ‘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1.12.15) : 보류
  - 사적 범위 등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후 재심의토록 함.
- ※ ‘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2.01.15) : 조건부가결
  - 매장문화재 존재 가능성을 고려 시굴조사를 선행한 후 시행토록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854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781-2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으로부터 약10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변경사항

	당초	변경	비 고
부지면적	369m <sup>2</sup>	369m <sup>2</sup>	
건축면적(연면적)	68.58m <sup>2</sup>	85.05m <sup>2</sup>	
구 조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아스팔트 싱글잇기	목구조, 경사지붕, 아스팔트 싱글잇기	
층수 및 높이	1층, 5.0m	1층, 5.0m	

#### 라. 지방자치단체(강진군) 의견

- 해당필지는 이미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였고, 허가사항 변경사항이 경량철골조에서 목구조, 일부 건축 면적 증가 등 경미하므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마. 검토의견

- 본 건물은 월남사지 삼층석탑 보호구역에서 약 100m 이격된 부지에 1층의 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하여 기 허가된 사안으로 금번에는 약 17m<sup>2</sup> 넓히고 경량철골조를 목구조로 변경하고자 재신청한 사항임.
- 신청부지에는 기존에 노후 된 1층 건물이 있고, 주변에는 부분적으로 기존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기존 건물에 가려져 신청부지가 직접 보이지는 않는 상황에서 일부 면적을 확장하는 사항이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13. 영암 도갑사 해탈문 주변 불교용품점 신축

#### 가. 제안사항

전남 영암군 소재 국보 「영암 도갑사 해탈문」 주변에 불교용품점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전남 영암군 소재 국보 「영암 도갑사 해탈문」 주변에 불교용품점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도갑사 주지
- (2) 대상문화재명 : 영암 도갑사 해탈문
  - 소재지 :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번지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230m
  - 사업내용 : 불교용품점 신축
    - 건축면적 : 114.66㎡
    - 건축구조 : 전통 한식목구조
    - 건축양식 : 정면 5칸, 측면 2칸, 물익공, 겹처마, 5량가 맞배집
    - 최고높이 : 7.64m

#### 라. 지방자치단체(영암군) 의견

- 신축부지가 해탈문에서 약 230m 떨어져 있고, 전통 한옥 건물로 경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영암 도갑사 해탈문에서 약 230m 이격된 부지에 불교용품 판매점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사찰로 진입하는 다리 건너편이며, 근래에까지 음식점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으나 지금은 철거된 상황임.
- 신청부지는 사찰 앞을 흐르는 하천 건너이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신청건물이 다소 높고 큰 점이 있으므로 사찰 초입부인 점을 감안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건물의 폭을 축소하여 높이를 낮추고, 양식은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건물의 규모와 양식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 14. 고창 선운사 대응전 주변 산사체험관 신축

### 가. 제안사항

전북 고창군 소재 보물 「고창 선운사 대응전」 주변 산사체험관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전북 고창군 소재 보물 「고창 선운사 대응전」 주변 산사체험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 (2) 대상문화재 : 고창 선운사 대응전
  - 소재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번지 선운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5-1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34m
  - 사업내용 : 산사체험관 1동 신축
    - 대지면적 : 3,278㎡
    - 건축면적(연면적) : 165.6㎡(165.6㎡), 정면 8칸, 측면 3칸
    - 건축구조 : 한식목구조, 기와지붕
    - 층고 및 높이 : 지상1층, 6.7m
    - 용도 : 템플스테이

라. 지방자치단체(고창군) 의견

- 의견없음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선운사 경내에 템플스테이를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성보박물관 인근으로 중심사역과는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임.
- 신청건물의 규모가 다소 큰 점이 있으나 신청부지가 사찰의 중심사역에서 벗어나 잘 보이지 않고 성보박물관과 함께 구역이 분리된 위치이므로 문화재 주변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15.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탁본

### 가. 제안사항

충남 공주시 소재 보물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을 탁본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탁본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립공주박물관 전시와 연구자료 활용을 위해 충남 공주시 소재 보물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을 탁본하고자 하는 사항임.
- ※ 2011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기술지도)으로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보존처리 작업 시행 중.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립공주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 :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번지 마곡사
  - 지정일 : 1984. 11. 3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번지 마곡사
  - 사업내용 :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탁본
    - 작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3일간
    - 작업내용 : 석탑 2층 탑신석 사면 불좌상 부조에 대한 탁본(각 2매) 제작
    - 작업방법 : 화선지와 유먹을 이용한 습식 탁본
    - 작업팀 : 한봉규(부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유혜선(부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홍승완(공주박물관 학예연구사) 등
    - 활용내용 : 특별전 및 향후 전시자료로 활용, 출판 및 연구자료로 제공



#### 라. 검토의견

- 본 건은 마곡사 오층석탑의 2층 탑신석 4면에 있는 불상 부조를 탁본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업으로 전시와 연구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시행한다고는 하나 탑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해문화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3D 스캔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7명, 원안가결 2명

## 16. 영양 현리 삼층석탑 주변 마을공동체험장 증축

### 가. 제안사항

경북 영양군 소재 보물 「영양 현리 삼층석탑」 주변 마을공동체험장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북 영양군 소재 보물 「영양 현리 삼층석탑」 주변 마을공동체험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영양군수
- (2) 대상문화재 : 영양 현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401번지
  - 지정일 : 1977. 08. 22.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448-2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316m
  - 사업내용 : 마을공동체험장 증축(창고)
    - 용도 : 마을공동체험장의 창고
    - 대지면적 : 2,965㎡
    - 증축면적 : 63㎡

구 분		기 준	변 경(증축)
가동	규모	480.47m <sup>2</sup>	480.47m <sup>2</sup>
	구조 및 양식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층고 및 높이	지상 1층, 6.1m	지상 1층, 6.1m
나동	규모	-	63m <sup>2</sup>
	구조 및 양식		경량철골조
	층고 및 높이		지상 1층, 4.63m

#### 라. 지방자치단체(영양군) 의견

- 신청부지에는 기존건축물이 있으며 문화재경계로부터 290m 떨어져 있고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문화재의 시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현상 변경 등 허가를 신청함.

#### 마. 검토의견

- 본 건물은 현리 삼층석탑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316m 이격된 부지에 마을 공동체험장(창고)을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 주변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 신청부지는 석탑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에 마을이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 신청건물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창고인 점을 감안하여 건물의 색채는 저채도 색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건물의 색채를 저채도 색상으로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 17. 구미 도리사 석탑 주변 적멸보궁 진입계단 문수, 보현보살 설치

### 가. 제안사항

경북 구미시 소재 보물 「구미 도리사 석탑」 주변 적멸보궁 진입계단 문수, 보현보살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북 구미시 소재 보물 「구미 도리사 석탑」 주변 적멸보궁 진입계단 문수, 보현보살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도리사
- (2) 대상문화재 : 구미 도리사 석탑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403번지 도리사
  - 지정일 : 1968. 12. 19.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403번지 도리사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적멸보궁 진입계단 문수, 보현보살 설치
    - 설치면적 : 계단 좌우 8.4m×15.7m 2식

### 라. 지방자치단체(구미시) 의견

- 문수·보현보살상은 일종의 불교미술 조형물로서,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현지조사의견('12.04.20)

- 본 건은 구미 도리사 경내에 있는 적멸보궁의 전면계단 옆에 문수·보현보살상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위치는 경사진 지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임.
- 보살상의 설치는 사찰의 종교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설치위치는 탑이 있는 기존 사역에서 이격된 위치이므로 당해문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통사찰의 경관 측면에서 볼 때, 신청안과 같이 설치된 사례가 없으며, 설치되는 상의 크기가 각각 8.4m × 15.7m로 거대하여 주변을 압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크기는 축소하고 형태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 18. 영주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상 및 여래좌상 주변 전력설비 신설

### 가. 제안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보물 「영주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상 및 여래좌상」 주변 전력설비를 신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북 영주시 소재 보물 「영주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상 및 여래좌상」 주변 전력설비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영주지사장
- (2) 대상문화재 : 영주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상 및 여래좌상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가흥1동 264-2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동 233-4, 267-7, 1384-69, 1386-3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과 인접
  - 사업내용 : 전주 신설 및 지중선 매설
    - 사업목적 : 배전선로 계통보강을 통한 설비건전성 유지 및 광역정전 예방
    - 공사내용
      - 지중관로(ELP 175mm 3공) 150m 신설(L=150m, B=1m)
      - 전주 2기 신설 (높이 16m)

라. 지방자치단체(영주시) 의견

- 의견없음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가흥동 마애여래삼존상 전면 인도에 배전선로 보강을 위해 지중화 전력을 신설하고 주변에 전주를 교체 또는 신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마애여래삼존상 전면의 지중화 굴착면은 잔디식재된 지역이므로 진동발생 염려가 없고, 전주 신설은 전력선을 정비하는 사업이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19. 경주 마동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보물 「경주 마동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북 경주시 소재 보물 「경주 마동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보존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 ※ '08.5월 문화재분포조사 실시, '08.8월 건축신고 하였으나 착공지연으로 허가 취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마동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마동 101-2, 101-3번지
  - 지정일 : 1987. 03. 09.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경주시 마동 59-4번지 외 1필지(65-14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약40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3동 신축
    - 대지면적 : 2,928m<sup>2</sup>
    - 건축면적(연면적) : 297.81m<sup>2</sup> (99.27m<sup>2</sup>×3동)
    - 건축구조 : 목구조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 1층, 경사지붕 5.4m



라. 지방자치단체(경주시) 의견

- 현상변경허용기준상 보존구역, 2008년 문화재조사완료하고 건축신고 완료된 지역이었으나 착공지연으로 취소된 지역임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경주 마동 삼층석탑 보호구역에서 약 400m 이격된 부지에 단독주택 3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문화재 분포조사 결과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고, 문화재에서 거리가 멀고 보이지 않으므로 문화재의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20. 경주 마동 삼층석탑 주변 요사채 신축(2차)

###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보물 「경주 마동 삼층석탑」 주변에 요사채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북 경주시 소재 보물 「경주 마동 삼층석탑」 주변에 요사채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보존구역”에 해당됨.
- ※ 2012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2.03.15) 심의결과 : 부결
  - 역사 문화경관에 저해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
- (2) 대상문화재 : 경주 마동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마동 101-2번지
  - 지정일 : 1987. 03. 09.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경주시 마동 272-2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450m
  - 사업내용 : 사찰(요사채) 3동 신축
    - 대지면적 : 2,585㎡
    - 건축면적(연면적) : 499.32㎡(499.32㎡)
    - 가동 156.06㎡, 나동 156.06㎡, 다동 187.2㎡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한식골기와
- 층고 및 높이 : 지상 1층, 6.988m

#### 라. 지방자치단체(경주시) 의견

- 현상변경허용기준상 1구역(보존구역)임/동일지역 2층 3동으로 신청 불허된 바 있음.

####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경주 마동 삼층석탑 보호구역에서 약 450m 이격된 부지에 2층의 종교시설(요사채) 3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하여 부결된 사항으로 금번에는 1층으로 조정하여 재신청하였고, 신청부지 주변에는 농가주택이 부분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임.
- 신청건물의 규모가 다소 큰 점이 있으나 단층으로 축소하였고 신청부지는 석탑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문화재의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21.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가스배관 매설(2차)

###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에 가스배관 매설 공사를 실시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에 가스배관 매설공사를 실시하고자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2012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2.03.15) 심의결과 : 부결
  - 개심사지 영역 통과 불허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북도시가스(주)
- (2) 대상문화재 :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00-3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09-2~서본리 336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과 인접
  - 사업내용 : 가스배관 매설공사
    - 사업목적 : 예천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매설
    - 공사내용 : 가스배관(300A) 1,930m 매설

#### 라. 지방자치단체(예천군) 의견

- 도시가스는 예천군민들을 위한 도시기반사업으로 수익성이 없는 주민 숙원 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음. 또한 도시가스 관이 지나가는 곳은 기존 도로 개설 시 탐기준으로 하여 3m이상 성토가 되었고, 기 도로로 1000mm 우수 관과 100mm상수도가 매설되어 있으므로, 함께 매설하여 사용하여도 무방 할 것으로 사료됨.

####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개심사지 전면 도로에 가스배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으 로 전면 도로는 개심사지의 영역을 횡단하여 지나가고 있으며 인도 하부 약 1.8m에는 배수관로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석탑의 지반선은 도로를 기준으로 약 1.5m 가량 아래에 위치하고, 근 래에 발굴된 적심유구는 약 2.5m 하부에서 출토되며, 가스 배관은 약 2m 하부에 매설될 계획으로 개심사지의 유구(초석, 기단석 등)가 남아 있을 경 우 터파기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 다만, 현 도로에 배수관로가 기존에 매설되어 있고, 가스배관이 지하에 매 설되어 경관상에는 문제가 없으며, 발굴되는 유구가 약 2.5m 하부에서 출 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심사지 구간에 대한 시굴조사를 선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대로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 22.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2차)

### 가. 제안사항

경북 칠곡군 소재 보물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북 칠곡군 소재 보물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2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2.02.16) 심의결과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에 건물형태가 어울리지 않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 소재지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91-6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88-11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약100m
  - 사업내용 : 기존건물 철거(62.14㎡) 후 단독주택 신축(99㎡)
    - 대지면적 : 352㎡
    - 건축면적(연면적) : 127㎡(99㎡)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최고높이 : 지상 1층, 경사지붕 5.5m

#### 라. 지방자치단체(칠곡군) 의견

-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단독주택 1층 30평 미만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문화재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송림사 오층전탑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00m 이격된 부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하여 ‘건물의 형태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유로 부결된 사안으로 계획 변경하여 재신청한임.
- 신청부지 주변에는 기존 가옥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금번 신청안은 경사지붕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비교적 문화재 주변 경관에 어울리도록 조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역과 가까운 지역이므로 매장유구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포 조사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분포조사를 선행 후 사업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 23. 예천 용문사 대장전 주변 화장실 이건(3차)

###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예천 용문사 대장전」 주변에 화장실을 이건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예천 용문사 대장전」 주변에 화장실을 이건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12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2.03.15) 심의결과 : 보류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검토토록 함.
- ※ 현지조사(‘12.03.29)
- ※ ‘12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2.04.09) 심의결과
  - 서쪽 주차장 주변 화장실 이건 : 보류(주변 정비 계획 후 재검토)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용문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예천 용문사 대장전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4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약30m
  - 사업내용 : 서측 주차장 주변 화장실 이건
    - 부지면적 : 985㎡



구 분	현 황		변 경	
	규 모	구조 및 양식	위 치	용 도
화장실	3칸×1칸 29.81㎡	한식목조, 맞배지붕	동쪽으로 13° 이동	세면장

#### 라. 지방자치단체(예천군) 의견

- 현재 서쪽 화장실의 사용이 드물고, 오물로 인한 악취가 심함으로 세면장으로 개축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마. 검토의견

- 본 건물은 예천 용문사 대장전 주변에 기존 수거식 화장실을 주요 구조재를 재사용하면서 규모 변동없이 이전하여 샤워실과 화장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용문사는 근래에 사역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화장실이 신축되었으나 기존 화장실은 당초 위치를 지키고 있으면서 악취 등을 발생하고 있어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축 위치가 중심사역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이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 24.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 3차)

###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공동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 공동주택 신축 시 허가된 사항중 이행하지 않은 내용을 변경허가 신청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2010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0.04.15)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지붕 요철(옥탑 등)의 높이를 줄이고 경관에 어울리는 경사지붕으로 하도록하며, 석탑 방향으로는 차폐용 수목을 식재하도록 함.
  - 사업 시행 전 유구조사를 시행하도록 함.
- ※ 2012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2.01.19) 심의결과 : 보류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후 재심의토록 함.
- ※ 현지조사(‘12.02.08)
- ※ 2012년 제4차 문화재위원회(건축문화재분과, ‘12.04.09) 심의결과 : 부결
  - 수정설계도면 미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토마토산업개발
- (2) 대상문화재 :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00-3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09번지
  - 문화재(보호구역)와 이격거리 : 120m
- 사업내용 : 허가사항 임의변경 내용 수정
  - 계단·승강기 옥탑 경사지붕 설치(4개소) : 철구조물 제작, 금속기와 (최고높이 31.85m→32.65m)
  - 동측 차폐수목 식수 보완 : 스트로프 잣나무(H:4.5~5/R8~12) 25주

(4) 주요 추진경과

- '10. 05. 04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등 허가통지
- '10. 06. 09 : 발굴조사 완료보고(발굴기간 : 05.17~05.28)
- '10. 11. 12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신고
- '11. 12. 01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완료신고  
→ 허가사항 임의변경 확인

<허가사항 임의변경 내용>

구 분	허가사항	완료신고	비 고
허가받는자	삼도건설(주)	(주)토마토 산업개발	명의변경
사업위치	남본리 209,210,211번지	남본리 209	지번 병합
부지면적(㎡)	4,392	4,342(감50)	도로부분 대지공제면적증가
건축면적(㎡)	1,202.32	1,212.86 (증10.54)	-
연면적(㎡)	8,446.86	6,816.22 (감1,630.64)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지하층 면적 감소
세대수	57	62 (증5)	최상층 1세대→2세대(2동) 1층 경사주차→1세대
층수 및 동수	6~9층 2개동	6~9층 2개동	-
외부마감	수성페인트칠	1,2층 석재마감	1,2층 외벽 석재마감
건물최고높이(m)	32.65	31.85	성토부분 제외
허가조건	경사지붕	부분 이행	계단·승강기탑 평지붕으로 시공
	유구조사	이행	-
	동측 차폐수목 식재	부분 이행	-

라. 지방자치단체(예천군) 의견 : 의견 없음

마. 검토의견

- 본 건은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으로부터 약 120m 이격된 부지에 지상 9층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하여 기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준공시점에서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현지조사 의견에 따라 도면 보완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변경사항은 조건부 허가 사항 중 지붕의 형태와 차폐수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1.5m 이상의 지붕면을 보이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 25. 완주 화암사 극락전 등 2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 가. 제안사항

전북 완주군 소재 국보 제316호 「완주 화암사 극락전」 등 2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완주 화암사 극락전」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승격('11.11.28)에 따라 완주 화암사 극락전 등 2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완주군수
- (2) 대상문화재
  - 국보 : 완주 화암사 극락전
  - 보물 : 완주 화암사 우화루
- 소재지 :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1078번지
- (3) 신청내용(완주 화암사 극락전 등 2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조정<안>)
  - 시행 완주 화암사 극락전 등 2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2009.12.07)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p>않는 재료 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

○ 신청 기준(안) : 기 시행 기준안과 같음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당초와 같음		

#### 라. 검토의견

- 화암사는 높은 산위에 있고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임.
- 기준안은 보호구역 주변 500m 전체를 1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깊은 산속으로 개발 여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찰 주변 100m까지 1구역으로 설정하고 기타 지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li> <li>-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li> </ul>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li> </ul>		

	<p>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

**마. 의결사항**

- 보류
  - 관계 법령 검토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보류 8명

## 26. 논산 노강서원 강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 가. 제안사항

충남 논산시 소재 보물 제1746호 「논산 노강서원 강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논산 노강서원 강당」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11.12.30)에 따라 논산 노강서원 강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논산시장
-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1746호 논산 노강서원 강당
  - 소재지 : 충남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227번지
- (3) 신청내용(논산 노강서원 강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조정<안>)
  - 기 시행 도지정유형문화재 노강서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2010.12.30)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증축 허용(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이내)		
제2구역	-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7구역	○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도문화재위원회개별심의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p>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도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영향검토 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ul>
--	---

○ 신청 기준(안)

- 보호구역 인접 필지는 1구역, 주변 100m 지역은 2구역, 주변 300m 지역은 3구역, 주변 500m 지역은 4구역으로 설정하되 전면 들은 전체적으로 2구역으로 설정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증축 허용(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이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li> <li>-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li> </ul>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라. 검토의견**

- 노강서원의 입지를 보면 전면의 넓은 들을 바라보면서 낮은 언덕의 경사진 지형을 이용하여 9부 능선 정도에 전학후묘의 배치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변에는 농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 신청 안은 서원을 둘러싸고 있는 한두 필지를 1구역으로 하고 연접하여 2구역(1층)으로 설정하였으나 서원 배면의 산 정상에 해당되는 지역과 전면 들의 일부 지역은 서원의 전후면 경관보호를 위하여 1구역으로 설정하고 기타 지역은 신청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과 같이 시행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27.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 가. 제안사항

충남 예산군 소재 보물 제508호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기 마련되어 운영중인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예산군수
- (2) 대상문화재 : 보물 제508호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
  - 소재지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리 산16번지
- (3) 신청내용(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조정<안>)
  - 기 시행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2010.08.30)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기존 범위 내 개·보수		
제2구역	-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제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	--

○ 신청 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기존 범위 내 개·보수		
제2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당초와 같음		

라. 검토의견

○ 현황

삽교읍 석조보살입상은 수암산 기슭의 높은 위치에서 북동향하여 전면의 덕산천과 넓은 들을 바라보고 있어 주변 경관은 비교적 좋은 편이나 석조보살입상으로 올라가는 길 주변에는 3층의 온천호텔과 단층의 농가주택이 일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

○ 당초

- 석조보살입상 전면의 임야와 하천은 자연 경관을 고려하여 신축을 제한.
- 석조보살입상 전면부는 지대가 낮으나 전면에 드러나는 지역이므로 마을 지역은 7.5m이하의 경사지붕으로 하고, 온천호텔 지역은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로 제한.
- 기타 지역은 관련법령에 따름.

○ 석조보살입상은 수암산 높은 위치에 있으므로 석조보살입상 주변 약 100m~200m의 임야는 자연 경관을 고려하여 신축을 제한하고, 진입부 주변의 마을과 온천호텔 지역은 지대가 많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2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2m)으로 완화하되, 그 너머 지역의 하천과 임야는 관계 법령에 따라 완화하여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li> <li>○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li> <l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li> <li>○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li> </ul>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과 같이 시행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28.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주변 템플스테이 건물 신축

### 가. 제안사항

경남 산청군 소재 보물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주변에 템플스테이 건물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사찰경역 내 공터에 템플스테이를 위한 건물 신축사항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고자 함.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원사주지
- (2) 대상문화재 :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 소재지 : 경남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2번지
  - 지정일 : 1992. 01. 15.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산 8-2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00m 이격
  - 사업내용 : 건물 신축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단층, 한식와가, 겹처마 맞배지붕
    - 면적 : 정면 18m(6칸) \* 측면 6.6m(2칸) = 118.80㎡
    - 높이 : G.L.에서 용마루까지 6.86m



#### 라. 검토의견

- 본 건은 대원사 경내에 템플스테이를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 신청부지는 석탑이 있는 중심사역에서 벗어난 지역이므로 사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배치와 평면 계획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위치와 평면계획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29.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주변 협문 철거 및 신축

### 가. 제안사항

경남 산청군 소재 보물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주변에 노후 협문을 철거하고 신규 협문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사찰경역 내 노후된 협문을 철거하고, 위치를 옮겨 신규로 협문을 설치하는 사항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고자 함.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원사주지
- (2) 대상문화재 : 산청 대원사 다층석탑
  - 소재지 : 경남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2번지
  - 지정일 : 1992. 01. 15.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산 5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70m 이격
  - 사업내용 : 협문 철거 및 신축

구분	현황	계획	비고
구조	한식목구조, 단층, 한식와가, 겹처마, 맞배	좌동	동일
주간폭	3.40m	5.40m	증 2m
높이	5.10m	5.95m	증 0.85m
위치	사찰 경내	사찰 진입부	위치변경

####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기존 사역 내 노후 협문을 철거하고, 사찰 입구에 위치를 이동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조·양식의 변화 없이 건축 규모만 변경하는 사항임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찰 전체 배치와 동선관계를 고려하여 위치와 적정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위치와 규모를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30. 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주변 농촌생활시설 정비

#### 가. 제안사항

강원 영월군 소재 보물 「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주변에 농촌생활시설을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법흥사 일원에 기존 조성된 체육시설 등을 철거하고, 부지 및 신규 체육시설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고자 함.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영월군수
- (2) 대상문화재 : 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 소재지 : 강원 영월군 수주면 무릉법흥로 1352번지
  - 지정일 : 1977. 08. 22.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966번지 외 1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50m 경계
  - 사업내용 : 농촌생활시설(체육시설 등) 정비
    - 토목공사 : 흙쌓기 180m<sup>3</sup>, 흙깎기 178m<sup>3</sup>
    - 구조물공사 : 전석쌓기 139m<sup>3</sup>, 맹암거설치 167m
    - 조경공사 : 체육시설 8종류, 팔각정자 신축(높이 4.9m/미송방부목 사용)

#### 라. 검토의견

- 본 건은 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가 있는 범홍사 주차장 인근의 기존 체육시설을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지 조성이 획일적이므로 기존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기존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31. 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주변 명상의 길 조성

### 가. 제안사항

강원 영월군 소재 보물 「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주변에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법흥사 일원에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고자 함.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영월군수
- (2) 대상문화재 : 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 소재지 : 강원 영월군 수주면 무릉법흥로 1352번지
  - 지정일 : 1977. 08. 22.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422-1번지 일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00m 경계
  - 사업내용 : 등산로 정비
    - 전체사업 : 난간로프 L=160m(경간 1.2m, 미송방부목), 종합안내판 1개소, 방향안내판 8개소, 현위치안내판 8개소, 벤치설치 2개소
    - 역사문화경관보존지역(500m) 내 사업 : 방향안내판 8개소, 벤치설치 2개소

#### 라. 검토의견

- 본 건은 영월 흥녕사지 징호대사탑비가 있는 법흥사 건너편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로프난간, 안내판, 벤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 32.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주변 단독주택 2동 신축(4차)

### 가. 제안사항

강원 원주시 소재 보물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주변에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고자하는 사항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 동 안건은 ‘11. 11차 문화재위원회(’11.11.17) 심의결과 / 부결
  - ※ 동 안건은 ‘12. 01차 문화재위원회(’12.01.19) 심의결과 / 부결
    - 부결사유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동 안건은 ‘12. 04차 문화재위원회(’12.04.09) 심의결과 / 보류
    - 보류사유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
  - 소재지 : 강원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517-2번지
  - 지정일 : 1968. 07. 05.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456-1번지 외 3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368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2동 신축



구분	2차 신청('12.01)	금회신청	비고
건축면적	106.3m <sup>2</sup> × 2동	97.72m <sup>2</sup> × 2동	1동당 8.6m <sup>2</sup> 축소
높이	1층 6.6m	1층 5.5m	1.1m 축소
기타	경사지붕, 적벽돌마감, 아스팔트형글 지붕		

#### 라. 현지조사의견('12.05.04)

- 본건은 흥법사지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295m 이격된 부지에 단독주택 4동을 신축코자 신청하여 부결된 사안으로 금번에는 신청부지 4필지에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재신청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임.
- 금번 신청안은 건물의 높이와 규모를 축소 조정하고, 건물의 배치를 4필지에 2동을 이격하며 조정시설 첨가하여 당초 계획안보다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완화한 것으로 판단됨.
- 단, 현상변경허용기준은 원주시 종합정비계획 수립 후 전체적인 영향성을 검토한 후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 33.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주변 창고신축

#### 가. 제안사항

충북 제천시 소재 보물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주변에 창고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함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기존건물 범위 내 개·보수 가능”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 소재지 :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002-1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009-2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200m 이격
  - 사업내용 : 창고신축
    - 면적 : 건축면적 58.5㎡(9m×6.5m), 연면적 58.5㎡
    - 높이 : 최고 5.7m
    - 구조 : 경량철골구조, 통나무(황토색)판넬, 아스팔트(고동색) 씬글지붕

## 라. 검토의견

- 본 건물은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에서 측면으로 약 208m 이격된 부지에 창고를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축부지가 사지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고 산능선에 가려져 보이지 않으며, 색채를 황토색, 고동색 등의 자연적인 색상을 채택하고 있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사항

### (1) 제천시장 의견

- 해당 문화재인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과는 직선거리 208m 정도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으며, 기존 주택으로 인하여 차단되어 있으며,
- 또한 임야 및 수목, 비닐하우스 등으로 차단되어 있어 실제 문화재 경관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한 지역임.
- 따라서, 원형보존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기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검토를 요청함.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 34. 홍천물걸리석조여래좌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강원 홍천군 소재 보물 「홍천물걸리석조여래좌상」 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홍천물걸리석조여래조상」 등 5개 보물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홍천물걸리석조여래좌상 등
  - 소재지 : 강원 홍천군 내촌면 동창로 153번길 34번지
  - 지정일 : 1971. 07. 0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580번지
    -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00m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면적 : 건축면적 87.13㎡, 연면적 98.21㎡
    - 구조 : 목조(스타코 마감), 아스팔트 형글 경사지붕
    - 높이 : 지상면 기준 6.05m

## 라. 검토의견

- 본 건물은 홍천 물걸리사지 보호구역에서 약 99m 이격된 부지에 2011년 2월 노후건물 철거 후 주택을 재건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부지와 보호구역 사이에는 낮은 산능선이 있어 신청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임.
- 신청부지는 산에 가려 보이지 않으며 1층 단독주택이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사지와 가까운 지역의 평탄지임을 고려하여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사항

### (1) 홍천군수 의견

-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 신청지는 당해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상 제1구역인 “원지형 보존”지역 끝에 해당하나 신청지가 당해 문화재로부터 약99m 이격되어 있고, 주거용인 지상1층 단독주택이며, 당해문화재 뒤 야산에 가려서 보이지 않으므로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여부』에 대하여는,
  - 현재 신청지는 전(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평편한 부지이므로 과도한 굴착이나 성토 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당해 문화재구역에서 잘 보이지 않으므로 경관저해 요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위와 같이 당해 문화재의 현상변경 기준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하나 당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7명, 원안가결 1명

## 35. 홍천물걸리석조여래좌상 주변 도로정비

### 가. 제안사항

강원 홍천군 소재 보물 「홍천물걸리석조여래좌상」 주변 도로정비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홍천물걸리석조여래조상」 등 5개 보물 주변에 기존 도로 확포장 하는 사항이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 및 제2구역 “관련법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홍천군수
- (2) 대상문화재 : 홍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등
  - 소재지 : 강원 홍천군 내촌면 동창로153번길 34번지
  - 지정일 : 1971. 07. 0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홍천군 내촌면 동창길 일원
    -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200m 이격
  - 사업내용 : 도로정비(확·포장)
    - 도로 확장 및 포장 : L= 860.0m , B= 당초 6m → 8.0~10m
    - 노건을 따라 U형 측구 및 씨드스프레이(거적덮기) 시공

## 라. 검토의견

- 본 건은 홍천 물걸리사지 진입부 도로를 확·포장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신청 도로부지는 사지에서 거리가 약 200m로 거리가 멀고 지대가 낮아 보이지 않으며, 기존 도로에서 인도를 확장하는 사업이므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사항

### (1) 홍천군수 의견

- 신청지는 당해 문화재로부터 약 200m이격되어 있어 당해 문화재에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로를 확장 및 포장하는 것으로 도로에 편입되는 주변 지역이 기존 전(밭)으로 이용되던 곳으로 과도한 성토나 굴착 등은 없으므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2-05-036

### 36. 덕수궁 석어당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서울 중구 소재 「덕수궁 석어당」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덕수궁 내 건조물문화재인 석어당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덕수궁 석어당(德壽宮 昔御堂)
  - 소유자(관리자) : 국유(문화재청 덕수궁관리사무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 덕수궁(사적 제124호)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양 식 : 2층(1층 : 정면 8칸, 측면 3칸, 2층 : 정면 6칸, 측면 3칸), 팔작지붕, 겹처마, 초익공집
  - 구 조 : 목조와가
  - 수 량 : 1동

#### 라. 현지조사의견('11.10.05)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부결
  - 지정가치 미흡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2012.02.08	대상문화재	덕수궁 석어당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학교	직위(직책)	문화재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덕수궁 석어당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p>중화전 뒤편에 배치되어 있는 석어당은 민가형식이면서 중층으로 된 특이한 건축물이다. 석어당은 1904년 중화전, 함녕전, 즉조당 등 덕수궁 내의 중심건물과 함께 화재로 소실된 것을 그해 재건하면서 민가형 민도리집 단청 없는 건축으로 되었다.</p> <p>석어당 서측으로 인접해 있는 즉조당과 준명당은 1904년 화재 이전에도 문헌에 기록되었으나 석어당은 화재 후부터 등장한다. 따라서 석어당의 1904년 이전에는 그 자리에 어떤 건축물이 어떤 규모와 양식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p> <p>100여 년 전의 배치도면에는 중화전과 석어당 사이에서 즉조당, 준명당 쪽으로 길게 행각이 있었고 석어당 좌·우 및 뒤편으로도 행각과 담장이 둘러쳐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p>		
	④ 연혁·유래 및 특징	<p>임진왜란으로 의주로 옮겨있던 선조가 1593년 다시 환도하면서 머물 궁궐이 마땅치 않아서, 석어당자리에 있던 건물에 머물게 되어, 왕이 거처하게 된 건물이라 하여 석어당이라고 명명됐다. 그 후 1618년에는 인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 석어당에 거처하였고, 1623년에는 인조반정 현장으로서 인조가 왕 즉위를 한 곳이다.</p> <p>1층은 정면8칸, 측면3칸이고 2층은 정면6칸, 측면1칸으로 1층은 초익공양식의 굴도리집구조이고, 2층은 3량집 민도리 구조의 중층 겹처마 팔작기와지붕이다.</p> <p>1층 평면은 정면과 측면 퇴칸 1칸씩을 회랑으로 중앙에서 2칸을 대청마루로 하고 대청마루 양쪽 2칸씩을 온돌방으로 하여 창호로 방을 구분했다. 2층 평면은 정면6칸, 측면 1칸이 모두 넓은 마루방이고 연등천정이다. 1층 정면과 뒷면 뒷마루에 내달은 고방, 외부면창은 정자살창분합문이고, 그 외 1층과 2층 모든 외면은 띠살창 분합문이다. 1층의 교창은 빗살문양이다. 내외의 기둥은 네모진 방주로 모접기와 면접기로 장식했다. 2층의 넓은 방에서 5개의 육중한 보와 보 중간에서 종도리를 받는 판대공 및 정연한 서까래등의</p>		

		구조부재들이 사방의 띠살창 채광으로 훤히 보인다. 긴 장방형 중층건축으로 측면의 처마선이 양곡이 부드러우나 정면과 후면의 처마선은 평행선 같은 직선적 감각이 강하게 보인다. 처마 밑에 노출되어있는 장연과 부연의 통일된 부재 조형이 정연하게 배치되었고, 장연과 부연에 얹여 구성된 개관, 평고대, 착고맥이 등의 완벽한 결구들이 보이는 조형미는 민가에서나 궁궐양식건축에서도 볼 수 없는 기하학적 분위기이다.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덕수궁 중화전 바로 뒤편에 중층 민가형식으로 된 석어당은 선조, 광해군, 인목대비, 인조 등과 관련된 역사성이 있다. 1904년에 재건되었으나 당시의 주위 행랑 및 담장은 없어졌고, 민가형식의 소박하고 단순한 구조이나 부재조형과 짜임새는 민가건축을 능가한 최고의 기술과 의장성이다.
	⑥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검토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1904년 화재로 그 해에 재건된 석어당은 건물 내외부공간의 원형이 불확실하고 또 상실되었다. 또 건축 연륜이 짧고 건축구조와 평면의 단순성 등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는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2년 2월 9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덕수궁 석어당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문화재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덕수궁 석어당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p>석어당은 중화전 뒤편 중심축선에서 우측으로 조금 빳겨 남향으로 앉아 있고 그 북쪽 좌측에는 즉조당과 준명당이 배치되어 있다. 석어당 동쪽 조금 낮은 곳에는 덕흥전과 함녕전이 행각으로 둘러쳐져 있고 그 북쪽에는 정관헌이 높게 자리 잡고 있다. 1902년에 그려진 《진연의궤》의 &lt;관명전도&gt;을 보면 원래는 석어당 앞쪽과 좌·우측 및 뒤편으로 행각과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p> <p>중화전의 서쪽 구역은 1909년에 지은 석조전이 남향으로 크게 자리 잡고 그 앞에는 큰 분수대와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분수대 서쪽에는 1938년에 세운 석조전 별관이 동향으로 놓여 있다.</p>		
	④ 연혁·유래 및 특징	<p>석어당은 1593년 선조가 환도 후에 머물렀던 집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1618년에는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경운궁에 유폐했을 당시 인목대비가 석어당에 거처하였으며, 1623년 인조반정 후에는 광해군이 이곳에서 인목대비에게 죄를 고하고 인조에게 옥새를 건넸던 곳이기도 하다. 그 후 1904년에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같은 해에 다시 중건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p> <p>건물은 덕수궁에서 정전을 제외한 유일한 2층 건물이며, 궁궐 건축물로는 드문 백골집이다. 1층은 정면 8칸, 측면 3칸이고, 2층은 정면 6칸, 측면 1칸인데, 1층의 정면 좌·우 뒷간과 측면 남쪽 협간은 주간이 반 정도로 좁다. 1층은 가운데에 대청을 두고 그 양측은 온돌방으로 구성하였다. 온돌방의 앞쪽과 양측면 및 배면에는 툇마루가 시설되어 있고, 대청 배면 툇마루에는 아자살 교란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공간은 외부와 각 실들 사이에 간살 크기와 용도에 따라 외쪽에서 4분합에 이르는 여단이 밋 들어열게 세살 창호를 설치하였는데, 온돌방의 정면과 배면에만 정자살로 꾸며 격을 높인 점이 주목된다. 대청의 정면과 배면 4분합들문 위에는 비교적</p>		

		<p>높은 교살 고창을 내어 실내 채광을 유도하였다. 2층은 좌측 온돌방 끝에 설치한 계단을 따라 올라서면 통칸의 아주 넓은 마루방인데, 우물마루가 아닌 장마루이다. 2층 계단 난간의 호로동자는 전통형식과 다른 모양새로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당시 근대기적 수법의 접목을 엿 보게 한다. 마루방 사방에는 판머름 위에 4분합여단이 띠살창을 달고, 연등천장으로 꾸몄다.</p> <p>구조양식은 장대석 바른층쌓기 한 전바닥 기단 위에 방형 초석을 놓고 모두 방주를 세워 1층은 초익공으로, 2층은 민도리형식으로 주량작하였다. 익공은 촛가지가 두루뭉술하며, 우주에는 촛가지 위에 운공 같은 촛가지가 하나 더 놓여 있다. 주간은 익공양식의 화려한 화반을 두지 않고 소로로 수장하여 전체적으로 간결 소박한 모습이다. 2층의 마루방 상부가구는 3량 가로 대량 위에는 소로를 끼운 제형판대공이 종도리를 지지하고 있다. 종도리에 그려진 용문양이 눈길을 끈다. 지붕의 합각부는 층량과 외기로 가구하지 않고 간략한 십자 도리로 추녀를 받게 했다. 지붕은 겹처마에 팔작지붕을 얹었는데, 조로와 후림을 거의 두지 않고 용마루와 내림마루도 각각 적새수를 중앙과 단부를 같게 하였기 때문에 여느 궁궐건축물과 달리 지붕의 곡선미가 화려하지 않다.</p>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⑥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p>선조가 환도 후 임시어소로 사용하고, 인목대비가 거처하고, 인조에게 옥새를 건넨 역사적 의미와 궁궐건축물에서 정전을 제외한 보기 드문 2층의 소박한 백골 건물이란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나 1904년 소실되어 중건한 지금의 건물은 창건 당시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우며 건축양식적으로도 다른 궁궐건축물과 비교해 볼 때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p>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5월 일

제출자: ○○○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b>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b>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덕수궁 석어당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직위(직책)	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덕수궁 석어당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별첨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별첨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첨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현행에 따름 <보호물> 현행에 따름 <보호구역> 현행에 따름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현행에 따름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별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2011년 11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div>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석어당은 궁궐 안에서 정전을 제외한 유일한 2층 건물로 외래적인 요소가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재래식 민가 건물로서 덕홍전과 함녕전이 자리한 지역보다 높 위치에 있다. 현재 중화전의 동쪽 뒤편에 있고 즉조당과는 축이 맞지 않는데 이것은 선조가 처음 의주에서 환도하여 시어소로 삼았을 때는 이 건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배치에 구애 받지 않아서인 듯하다.

석어당과 덕홍전 사이에는 궁궐의 내부 공간을 구획한 낮은 담장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축한 셋문인 유현문이 고아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 ○ 연혁·유래 및 특징

### - 연혁·유래

이곳은 임진왜란 후 선조가 환도하여 승하할 때까지 16년간 어소로 사용했던 곳이며, 인목대비가 광해군을 이 건 앞뜰에 꿰어 앉혀 죄를 책한 곳으로 전해진다. 현재의 건물은 1904년 불에 탄 것을 같은 해에 다시 중건한 건물로서 가칠을 하지 않은 백골 집으로 이름 나 있다. 아래쪽 현판은 고종의 친필이다.

### - 건축적 특징

독특한 중층 건물로, 장대석 기단 위에 네모기둥을 놓아 지붕을 받고 있다. 하층은 정면 8칸, 측면 3칸이며 상층은 정면 6칸, 측면 1칸을 하고 있는 굴도리집으로, 올라 다니는 계단은 서쪽 끝에 설치되어 있다. 지붕은 팔작지붕이고 상·하층 모두 겹처마이며 2층의 합각머리는 우주와 같은 위치에 결구되었는데 이런 수법은 전통 범식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하층 평주 위에 익공계의 공포를 짜고 상층은 전형적인 민도리 집 양식으로 전면 중앙 2칸은 개방하여 뒷마루를 깔았고 후면에는 길쭉하게 쪽마루를 깔고 문을 달았다. 문과 광창은 우물무늬의 사분합이고 후면의 별도로 축조된 뒷간의 중앙부에는 ‘亞’자 난간을 설치하였다.

## ○ 지정가치

덕수궁 유일의 2층 목조 건축물로 다양한 창호와 함께 자연스럽고 우아한 건축미가 돋보이는 점이 있으나 1904년 화재로 재건되어 건축 연륜이 짧고 건축구조와 평면의 단순성 등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는 미흡하다고 사료됨.



## 37. 덕수궁 즉조당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서울 중구 소재 「덕수궁 즉조당」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덕수궁 내 건조물문화재인 즉조당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덕수궁 즉조당(德壽宮 卽阼堂)
  - 소유자(관리자) : 국유(문화재청 덕수궁관리사무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 덕수궁(사적 제124호)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양 식 : 1층 팔작지붕/정면 7칸, 측면 3칸, 겹처마, 초익공집
  - 구 조 : 목조와가
  - 수 량 : 1동

### 라. 현지조사의견('11.10.05)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부결

- 지정가치 미흡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2012.03.06	대상문화재	덕수궁 즉조당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문화재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덕수궁 즉조당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p>중화전 뒤편에 즉조당과 준명당이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다. 중화전과의 사이에는 행각이 있었고, 즉조당과 준명당의 좌우와 후면에도 행각과 담장이 설치되어 한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재 행각과 담장은 없고, 건물만 남았다.</p> <p>인조의 즉위식이 이루어진 곳이어서 즉조당이라 명명되었고, 고종황제때에는 대한제국 선포 후 태극권, 중화전으로 불리면서 궁궐의 정전기능을 갖기도 했으나, 중화전이 세워지면서 다시 즉조당으로 되었다. 1904년에 함녕전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화전 즉조당, 석어당 등이 연소하게 되었으나, 그 해에 석어당, 즉조당 등은 중건되었다.</p>		
	④ 연혁·유래 및 특징	<p>정면 7칸, 측면 3칸에 초익공 양식의 겹처마 합각기와 지붕이다. 3칸대청 정면에는 기단을 오르는 3개의 계단이었으나, 중앙 계단에 소맷돌은 없다. 반듯하게 가공된 4각석주에 방주를 세웠고, 동측 1칸을 온돌방으로 하고, 서측에서 첫 번째 칸은 준명당과 연결되는 루마루식 마루이고 2째칸과 3째칸 등 두 칸은 온돌방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세 칸은 대청마루로 되어있다. 정면 뒷간은 통로로 하고, 대청마루 전면은 개방되었으나, 양 편의 온돌방 전면은 분합문 살창을 달고 그 위에 교창을 두었다. 측면과 후면의 지붕밑 뒷마루를 내달아 외부에 창호를 설치하여 내부공간화 하였다. 단, 대청 후면 뒷마루에는 난간을 설치하여 출입되도록 했다. 대청과 뒷간의 바닥은 우물마루이고, 대청의 천정은 우물천정에 단청을 했다. 뒷마루 천정은 연등천정이고, 온돌방 천정은 반자에 종이도배를 했다. 임진왜란 후, 선조부터 인연을 갖게 된 후, 광해군, 인조, 고종 및 순종 때까지 정전, 편전, 침전 등으로 사용된 곳이다.</p> <p>특히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곳으로 1897년부터 1902년까지</p>		

		대한제국 정전으로 사용되었다.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⑥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p>고종 어필의 편액과 대한제국 선포의 뜻이 담긴 주련의 글이 있다. 궁궐 건축으로 정전, 편전, 침전 등의 기능 구분이 불확실한 공간구성이며, 구조 형식 및 부재 결구와 조형성에서 궁궐건축으로의 특성이 약하다. 건축적인 특성보다 선조부터 고종까지의 역사성이 부각되는 건축이다.</p> <p>1904년 재건 건축으로 건축적 우수성이 미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서는 미흡하다.</p>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2년 3월 7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덕수궁 즉조당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문화재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덕수궁 즉조당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p>즉조당은 중화전 뒤편 중심축선상에 남향으로 앉아 있으며, 좌측으로는 운각으로 연결된 준명당이 병렬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진찬의궤》에 그려진 즉조당 영역을 보면 준명당과의 사이에 연결 복도 없이 사방에 행각과 담장을 설치하여 별곽으로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p> <p>즉조당 앞마당 우측에는 석어당이 있고 그 동측으로는 덕홍전과 함녕전이 배치되어 있고 이들 북쪽에 정관헌이 놓여 있다. 서쪽 구역에는 1909년에 지은 석조전이 남향으로 크게 자리 잡고 그 앞에는 큰 분수대와 정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분수대 서쪽에는 1938년에 세운 석조전 별관이 동향으로 놓여 있다.</p>		
	④ 연혁·유래 및 특징	<p>즉조당은 1593년 선조의 임시 어소로 사용됐던 곳으로 1623년에는 인조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의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왕의 즉위가 이루어졌다하여 ‘즉조당’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황제도 이곳에서 황제로 즉위하였고, 순종의 즉위식 역시 여기서 시작되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명칭이 태극전과 중화전으로 바뀌었으나 1902년 중화전이 건립되면서 다시 즉조당으로 불렸다. 1904년 화재로 즉조당이 석어당 등과 함께 소실되자 같은 해에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07년부터 1911년까지는 고종의 후비 엄씨가 거처하기도 했다.</p> <p>건물은 정면 7칸, 측면 2.5칸 규모로 좌에서부터 1칸 마루방·2칸 온돌방·3칸 대청·1칸 온돌방 순으로 놓여있다. 좌측 마루방은 준명당과의 사이에 있는 운각과 연결되는 누 마루식 공간으로 외부 세 면에 판머름을 들인 4분합여단이띠살 창을 달았다. 양측 온돌방과 대청의 정면과 배면에는 툇마루를 두었는데,</p>		

		<p>두 공간 사이에 창호를 설치하여 별도의 뒷마루 방이 되게 했다. 대청 배면의 뒷마루는 아자살 교란이 설치되어 있고 그 가운데 출입 통로가 나있으며, 우측 온돌방은 동측에도 뒷마루 방이 하나 더 달려 있다. 대청은 정면의 뒷마루 앞은 개방하고 그 뒤쪽과 양측 온돌방 그리고 배면 마루 방 사이에는 4~6분합 창호를 설치하여 공간 통폐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대청에는 띠살 문양 창호와 교살 고창을, 온돌방에는 정자살 문양과 정자살 고창을 달아 두 공간에 차별성을 두었다.</p> <p>장대석을 바른 층으로 쌓고 전을 간 기단 위에 방형 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운 초익공 겹처마 팔작지붕 집이다. 대청 앞쪽 정면 기단에는 소맷돌 없이 소박하게 꾸민 3개의 오름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대청의 천장은 우물반자로, 뒷마루의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온돌방의 천장은 지반자로 꾸몄다. 익공은 여느것과 달리 촛가지가 두루뭉술하며, 우주에는 촛가지 위에 운공 같은 촛가지가 하나 더 놓여 있다. 주간은 익공양식의 화려한 화반을 두지 않고 소로로 수장하여 전체적으로 간결 소박한 모습이다. 한편 대청 내부 기둥에는 “구천창합개궁전 만국의관배면류(九天閭闔開宮殿萬國衣冠拜冕旒)”라는 주련이 있는데, 이는 대한제국 출범 당시 만국의 사신들이 고종황제에게 조회하는 모습을 전하는 것이다. 지붕은 용마루와 합각마루에 취두가 있을 뿐 조로와 후림이 거의 없고 용마루와 내림마루도 각각 중앙과 단부의 적새수가 같아서 여느 궁궐건축물과 달리 지붕의 곡선미와 화려함이 떨어진다. 단청은 주의 없는 모로 단청으로 시채하였다.</p>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⑥지정 대상 및 범위	<p>&lt;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gt;</p> <p>&lt;보호물&gt;</p> <p>&lt;보호구역&gt;</p>
보호 관리 사항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검토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p>종합의견</p>	<p>즉조당은 선조의 임시 어소, 인조 즉위식, 고종 후비 엄씨의 거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대한제국 출범 당시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 주련이 남아 있는 등의 역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으나 1904년 중건 이전의 모습을 온전히 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유사 궁궐건축물과 견주어 보아도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p>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2년 5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 ○</p> <p>문화재청장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b>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b>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덕수궁 즉조당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직위(직책)	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덕수궁 즉조당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별첨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별첨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첨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현행에 따름 <보호물> 현행에 따름 <보호구역> 현행에 따름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현행에 따름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별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2011년 11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div>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중화전의 북쪽에 있는 연침으로서 왕의 집무실로도 쓰였으며 지금은 준명당과 2칸 북도로 연결되어 있다.

## ○ 연혁·유래 및 특징

### - 연혁·유래

인조가 이곳에서 즉위하였다 하여 즉조당이란 당호가 생겼다하며, 법전인 중화전이 건립되기 전에는 정전으로도 쓰였다. 그 후 광무 원년에 태극전으로 바꿨다가 다시 중화전으로 개칭하였는데 대한제국 광무 8년에 화재를 입어 같은 해 함녕전과 석어당을 중건할 때 다시 중건하였다.

순종이 이곳에서 즉위하였으며 고종의 후비 엄씨가 1907년부터 1911년에 승하할 때까지 이곳에서 기거하기도 했다. 또한 광무 원년에는 즉조당에 경호전을 이안한 바 있고, 고종 5년에는 열성영정을 모셔두기도 했다.

### - 건축적 특징

궁의 침전으로 크지는 않지만 정면 7칸, 측면 4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간결하고 짜임새가 돋보이는 건물이다. 건물에 비해 비교적 큰 기단을 두었고 건물 전면 동쪽으로 편향하여 2, 3, 4번째 3칸에는 퇴를 두어 개방하고 있으며 내부는 거실로 이용했다. 이곳의 앞뜰에는 넓은 잔디가 있고 잔디 위에는 괴석이 있는데, 낙선재나 연경당, 대조전 뜰에서처럼 전각과 괴석이 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이 배열되어 있다. 이것은 1984년 창경궁에서 옮겨 온 것이다.

이 건물은 준명당, 석어당과 함께 덕수궁의 특색을 잘 보여주는 건물로서, 처음에는 개인주택이었지만 후에 궁전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개인주택의 모습이 궁궐에 남아 있는 건물이다.

## ○ 지정가치

덕수궁에서 석어당과 함께 임진왜란 때 선조의 임시어소가 된 곳으로 덕수궁의 모태가 된 전각이라는 점이 있으나 1904년 화재로 재건되어 건축 연륜이 짧고 건축구조와 평면의 특징이 약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는 미흡하다고 사료됨.

### 38. 덕수궁 정관헌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서울 중구 소재 「덕수궁 정관헌」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덕수궁 내 건조물문화재인 정관헌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덕수궁 정관헌(德壽宮 靜觀軒)
  - 소유자(관리자) : 국유(문화재청 덕수궁관리사무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 덕수궁(사적 제124호)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양 식 : 1층 팔작지붕/정면 7칸, 측면 5칸, 한옥 및 양식 절충건물
  - 구 조 : 조적조
  - 수 량 : 1동

#### 라. 현지조사의견('11.10.05)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부결
  - 지정가치 미흡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2012.02.08	대상문화재	덕수궁 정관헌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문화재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덕수궁 정관헌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덕수궁에서 침전기능의 함녕전 뒤편에 후원에 해당되는 곳에 정관헌이 자리한다. 정면7칸, 측면5칸은 전면과 좌우로 기단갑석까지 설치된 차양기능의 베란다를 기준한 칸수이다. 베란다 안쪽의 본건물은 벽돌 조적조 건축이고 넓은 터진 홀 뒤편으로 방이 구성되어 있다. 고종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임시로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모시기도 했고, 고종의 어진과 순종의 예진을 보관하기도 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찻집으로 활용되기도 했고, 근래에는 전시 및 공연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4면이 담장으로 둘러싸여 독립된 공간이었으나 서측 담장만 현존하고 있다.			
	④ 연혁·유래 및 특징	1900년 전후에 건축된 정관헌은 3벌대 기단 갑석에 세운 베란다의 목조기둥과 난간 문양과 베란다 기둥머리 및 상부의 장식문양이 섬세하게 조각된 것이 특이하다. 베란다 안쪽의 조적구조 건축은 뒷면은 벽돌벽 구조로 하고 정면과 좌우에는 4각 초석위에 서양식 로마네스크풍의 원형 인조석을 세웠다. 사진자료에는 원형기둥에 벽과 창이 있었으나 지금은 기둥만 있는 정자기능의 터진 공간이다. 천정은 반자로 하고 단청을 했으며 지붕은 동판으로 한 팔작지붕 형식이다.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⑦ 문화재 보존 영				

관리 사항 검토	향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작안사항	
종합의견		주위 환경과 건물 원형 변경이 심하다. 서양에서 철을 소재로 한 로코코식 양식을 목재로 하고 문양과 채색과 동판의 팔작지붕조형의 조화가 어색하다. 보물지정에 미흡한 점이 많다.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2년 2월 9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덕수궁 정관헌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문화재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덕수궁 정관헌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정관헌은 중화전 동쪽에 나란히 앉아 있는 덕홍전과 함녕전 북쪽 화계 위의 높은 곳에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측 약간 아래쪽에는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석어당·즉조당·준명당이 있고 그 서쪽에는 석조전이 크게 배치되어 있다. 석조전 앞으로는 큰 분수대와 정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분수대 서쪽에는 석조전 별관이 동향으로 놓여 있다.		
	④ 연혁·유래 및 특징	<p>정관헌의 창건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01년에 태조의 영정을 모시기로 결정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관헌이란 이름의 의미와 위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종이 휴식을 취하거나 여흥을 즐기기 위하여 지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고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태조의 영정을 모셔 진전의 역할을 하고 진찬 때 음식을 올리기도 하였으며, 황태자와 함께 영정을 그리는 장소로 사용된 적도 있었다.</p> <p>정관헌은 궁궐건축 중 초기 양식 건축에 속하는 건물로 그 모습이 독특하다. 건물은 장대석을 바른 층으로 쌓아서 적벽돌 조적조의 본 건물을 배면 끝선까지 물려 앉히고 정면과 좌·우측면에 가적 같은 지붕을 덮은 베란다를 두었다. 본 건물은 로마네스크 풍으로 전면에 삼면이 개방된 큰 홀이 있고 그 뒤에 크고 작은 네 개의 부속실이 있다. 건물 아래에는 지하공간도 있다. 정면과 좌·우측면 삼면에는 진입 계단을 두고 기단 가장자리에 로마의 콤포지트 오더 양식의 나무 기둥과 함께 철 난간을 설치하였다. 기둥 상부와 주간에는 마치 낙양 장식처럼 화려한 색채로 청룡·황룡·박쥐·각종 화초 문양 등이 섬세하게 투각되어 있고, 철 난간은 소나무와 사슴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들 문양은 한국의 전통문양</p>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서양식 건물에 우리나라 문화와 정서를 담고자하는 의도를 읽게 한다. 천장은 격자형 틀로 장식한 평반자이고 지붕은 서양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팔작지붕이나 지붕 선은 우리나라와 달리 직선이다. 동판으로 이은 지붕의 용마루 아래쪽 박공판이 만나는 곳에는 현어로 장식하였다.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⑥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정관헌은 대한제국 황궁의 위상을 갖게 되면서 지은 궁궐건축 중 초기양식에 속하는 건물로 서양 건물양식에 우리나라 문화와 정서를 담은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한국 고유의 전통양식과는 많은 부분이 상이한 이국적인 건물이라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2년 5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 ○</p> <p>문화재청장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덕수궁 정관헌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직위(직책)	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덕수궁 정관헌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별첨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별첨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첨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현행에 따름		
<보호물> 현행에 따름				
<보호구역> 현행에 따름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현행에 따름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별첨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1년 11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p> <p><b>문화재청장 귀하</b></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함녕전 북쪽에 있는 정관헌은 고종황제가 다과를 들며 음악을 감상하는 연유장소로 쓰였던 곳으로, 팔작지붕 등 동양적 요소를 많이 보이고 있는 벽돌조 단층 양옥건물이다.

## ○ 연혁·유래 및 특징

### - 연혁·유래

이 건물은 고종이 아관파천에서 덕수궁으로 환궁할 즈음에 궁 내에 있는 몇 개동의 양관과 함께 지은 건물 중에서 가장 초기의 것으로 1900년경 러시아 건축가 사바친의 설계로 건립되었다. 그러나 1903, 1905년에 걸친 수리가 당시 궁내부에 고용된 외국인들의 주도로 시행된 기록이 있어 이때 지금의 모습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광무 4년 진전의 화재 뒤 태조의 영정을 봉안하고 일시적으로 경운당이라고 하였으나 1901년에 새 진전이 완성됨에 따라 영정을 그곳으로 옮겼다. 그 후 흠문각에서의 고종의 어진과 계명재에서 순종의 어진을 일시에 이 건물에 이안하였다가 함께 흠문각에 환봉하기도 하였다.

### - 건축적 특징

정면 7칸, 측면 5칸의 장방형 평면으로 내부공간은 차양 같은 외진과 팔작지붕 형태의 내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내부 독립기둥과 벽 일부는 벽돌로 쌓고 독립기둥은 인조석으로 로마네스크풍의 인조석 기둥 위에 둔중한 주두를 얹고 있다.

외진주는 베란다에 차양을 두른 형태의 틈간을 두었는데, 정교하게 가공한 가느다란 나무기둥을 사용하여 주두에 아칸서스 비슷한 식물 잎 모양 위에 활짝 핀 꽃을 두고 네 모서리는 나선형의 장식을 깊게 팠으며, 기둥사이의 상부는 투각으로 가운데에 화병을, 양옆 삼각부에는 운학을 장식하였다. 특히 외진주 하부는 철제 난간에 사슴, 소나무, 박쥐, 당초 등의 무늬를 투각하여 한국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특히 베란다에 돌린 목조기둥과 동제난간이 더욱 정교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궁궐 건축에 종사하던 장인들의 솜씨로 추정된다.

## ○ 지정가치

전통양식과 서양식이 잘 조화를 이룬 독특한 건물로 대한제국기를 증거하는 건축물인 점이 있으나 1900년경 건축되어 건축 연륜이 짧고 건축구조와 평면의 단순성 등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는 미흡하다고 사료됨.

### 39. 창덕궁 연경당 일곽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창덕궁 연경당」 일곽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창덕궁 내 건조물문화재인 연경당 일곽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창덕궁 연경당(昌德宮 演慶堂) 일곽
  - 소유자(관리자) : 국유(문화재청 창덕궁관리사무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번지 창덕궁(사적 제122호)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구조 및 양식
    - 연경당 사랑채, 안채 : 정면 6칸, 측면 2칸/ 단층, 팔작지붕, 민도리집
    - 연경당 행각
  - 구 조 : 목조와가
  - 수 량 : 1동

#### 라. 현지조사의견('11.10.05)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지정가치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창덕궁 연경당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문화재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창덕궁 연경당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p>창덕궁 후원의 부용지 동측에 있는 영화당 앞을 지나서 북쪽으로 가면 불로문과 연지와 애련정이 있고 그 서편에 연경당이 있다. 연경당은 순조의 세자가 임금의 덕을 칭송하여 올리는 존호의례를 행하기 위해 순조 28년(1828)에 신축한 것이며, 현재의 모습은 1865년에 다시 건축되었다.</p> <p>궁궐 내에서 사대부 살림집 형식을 택한 공간 구성과 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정문인 솟을대문 장락문과 바깥행랑, 중문과 중문행랑, 안채와 사랑채, 선향재, 반빗간, 정자 등의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다.</p>		
	④ 연혁·유래 및 특징	<p>작은 실개천의 돌다리를 건너서면, 솟을대문(장락문) 좌우로 연결된 행랑의 동측은 판재담장이고 서측은 사고석 담장으로 차별화된 모습은 마구간 기능은 판재담장이고, 방, 헛간, 마루는 사고석담장으로 구분했다. 2개 중문 중에 서측문은 솟을문이고 동측은 평문으로 되어 사랑채와 안채의 출입문을 차별화했다.</p> <p>사랑채 중문을 들어가면 사랑마당 건너 사랑채가 있고 사랑채 동측으로 누마루를 형성했다. 안채 중문을 들어서면 안마당 중앙으로 안방을 연장 돌출시킨 안채 누마루와 마주한다.</p> <p>안마당과 사랑마당은 담장으로 분리하고 일각대문을 설치했다. 사랑채는 정면6칸, 측면2칸의 홀처마 팔작기와지붕으로 된 민도리 집이다. 5량집 구조로 대청은 연등천정으로 하고 방은 반자로 천정을 하였고, 포작과 단청이 없는 조선사대부 주택형이다.</p> <p>기단·초석들의 석재가공과 짜임새, 그리고 기둥·보 등의 구조부재 치목과 서까래 배열과 처마곡선 및 창문·창살의 의장성은 궁궐의 최고 기술이 활용되었다. 안채에는 부엌이 없고 취사는 안채 뒤편의 반빗간에서 하도록 되어있다.</p> <p>사랑채 동측으로 차양이 설치된 서재기능의 선향재가 있다. 선향재는 정면7칸에 측면은 벽돌조적조구조로 된 홀처마 맞배 기와지붕이다. 중앙의 3칸은 대청마루로 하고 양쪽에 2칸씩은 온돌방으로</p>		

		했다. 선향재 전면과 후면에는 뒷마루를 설치하였고, 뒷마당은 경사지형을 5단의 축대를 쌓아 화계로 하고 상부의 북측에 고급스런 농수정(1칸×1칸)이 있다.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p>창덕궁의 후원에서 궁궐 건축이 아닌 사대부주택형식이다. 북쪽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주택의 서쪽으로 감돌아 바깥행랑채 솟을대문 앞으로 흐르게 하여, 돌다리를 건너 들어오게 하는 등 풍수설을 활용하고, 사대부 생활 철학이 유교사상을 철저히 적용시켜서 남·녀 구별을 출입동선분리, 마당분리, 안채와 사랑채 분리 등이 명확하게 구성되어있다.</p> <p>단순한 구조형식이고 띠살창을 기준으로 사용하였고, 흘처마 지붕이지만 부재의 가공과 짜임이 아주 우수하다.</p> <p>120칸이 넘는 정연한 담장, 사랑채 누마루의 위용과 넓은 반듯한 마당 그리고 수목과 자연환경 등은 사대부 주택에서 볼 수 없는 궁궐 분위기다.</p>
	⑥지정 대상 및 범위	<p>&lt;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gt; 연경당 담장 내 모든 공간과 건물</p> <p>&lt;보호물&gt;</p> <p>&lt;보호구역&gt;</p>
보호 관리 사항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p>궁궐 내에서 사대부 주택 형식을 취한 연경당은 건물배치, 공간구성이 유교사상이 철저히 적용된 우수한 건물이다. 본 건물의 역사성에는 걸맞은 흔적이 없다. 즉 한가족구성에서 주거역사 및 마을과의 연관성, 사회와 연관성, 그리고 한가정이 역사성 없이 150년 가깝게 실제로 살림흔적이 없는 주택이나, 조선왕조 사대부 주거 생활에 준한 철저한 공간구성과 건축의 우수성은 보물지정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p>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2년 2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창덕궁 연경당 일원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문화재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창덕궁 연경당 일원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p>연경당 일곽은 후원의 첫 번째 구역인 부용정·주합루·영화당 등이 있는 곳을 지나서 계속 들어가면 일곽을 이룬 의두합·운경거와 애련정과 애련지 등이 조성되어 있는 두 번째 구역의 안쪽 아늑한 골짜기에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애련지의 동남쪽에 나있는 불로문을 들어서면 우측에 방형의 애련지에 두 기둥을 담은 앙증스러운 애련정이 보이고 애련지 남서쪽에 있는 또 하나의 일각문을 지나면 삼면이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연경당이 바라보인다. 연경당의 주변 환경은 아름다운 숲과 연못 및 정자 등이 어우러져 이상적인 경관을 이루고 있다.</p> <p>‘연경(演慶)’은 경사가 널리 퍼진다는 뜻이다.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를 위한 잔치를 베풀고자 1827~8년(순조 27~8)경 지은 효심이 담긴 집이다. 창건 직후 연경당에서는 효명세자가 신하를 접견하거나 진작례를 거행하였다. 헌종 대 이후에는 익종(효명세자)의 어진과 모훈을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되다가 1857년(철종 8)에 터가 서늘하고 습하다는 이유로 익종의 초상화를 다른 곳으로 옮겨한 동안 빈 집으로 남아 있었다. 그 후 고종 대에 이르러 외국 공사를 접견하고 연회를 베푸는 등 중요한 정치 공간으로 이용하였다.</p>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별첨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첨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⑦문화재 보존 영 향 행위기준안	
검토	⑧보존정비 및 활 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별첨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2년 5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p> <p><b>문화재청장 귀하</b></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4. . : 연경당은 1828년(순조 28)년에 효명세자가 민간의 사대부가  
를 모방하여 지은 민가형식 건물이다. ‘동궐도’(순조 연간 제작)를 보면 위치와 모습이  
지금과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현재 연경당은 궁궐지(고종 대 발간)의 “사랑채 14  
칸과 내당(안채) 10칸 반 그리고 선향채 14칸, 농수정 1칸, 북행각·서행각·남행각이  
둘러싸고 그 밖에 외행각이 있다”는 기록이 순종 때의 ‘동궐도형’과 거의 같다. 따라서  
지금의 연경당과 다른 별개의 연경당이 존재하였는지 아니면 순조 대 건물이 언젠가  
멸실되고 지금의 위치에 다시 지은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맨 앞에 자리 잡고 있는 대문간행랑채의 전방에는 북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수로  
와 이를 지나는 석교가 있다. 수로와 석교는 풍수적으로 은하수와 오작교를 상징하고  
장락문(長樂門)으로 들어가면 오래도록 즐겁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대문간 앞의 수로  
와 연못은 사대부가에서는 구례 운조루(중요민속문화재 8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앞에서부터 대문간행랑채·중문간행랑채·안채 및 사랑채·반딧간이 차례로 배치되  
어 있다. 행랑채를 앞뒤 이중으로 둔 배치는 사대부가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모습  
으로 궁전의 면모를 읽게 한다. 안채 좌측에는 중문간행랑채와 이어진 안채행랑채를,  
사랑채 우측에는 서재인 선향채를 두고 선향채 뒤편 높은 언덕 위에는 농수정을 앉혔  
다. 이들 건물들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담장으로 경계를 짓고 있는데, 바깥행랑채·사랑

채·안채·반빗간·정자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사랑채는 중문간행랑채의 우측 솟을 대문인 장양문(長陽門)으로, 안채는 좌측 평대문인 수인문(修仁門)으로 드나들게 하였는데, 지붕 높이를 달리 한 것은 음양 원리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또 사랑채와 안채는 사대부가처럼 조선시대의 유교적 덕목에 따라 내외공간 구분을 엄격하게 반영하고, 특히 안채에 부엌을 두지 않고 여성전용 가사 작업공간을 별곽으로 마련한 것은 사대부가에서 볼 수 없는 배치유형으로 주목된다. 사랑채 정면 기단 앞에는 초헌이나 말을 타고 내릴 때 발을 딛는 노뚝돌(하마석)이 놓여 있다.

장양문으로 들어서면 넓은 마당 건너에 사랑채가 정면 6칸, 측면 2칸 규모로 자리 잡고 있다. 맨 우측에 1칸 누마루를 두고 그 좌측으로는 사랑대청·사랑방·마루방을 배열하였는데, 안동 하회 북촌댁(중요민속문화재 84호)와 유사하다. 사랑방과 마루방 뒤에 놓인 침방은 안채와 연결해 있으며, 뒤편으로는 사랑채와 안채를 오갈 수 있는 쪽마루를 깔았다. 사랑방 뒤편에 침방을 어긋나게 겹치도록 한 평면구성은 낙선재와 석복헌과 비슷한데, 사대부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주목된다. 누마루는 잘 다듬은 고급스러운 완자살을 배푼 창호를 달아서 가장 돋보이게 하여 격을 높였다. 사랑대청 앞 4분합 들문 위의 완자살 고창도 사대부가의 일반적인 교살과 다른 모습으로 궁전의 권위를 읽게 한다. 누마루·사랑대청·사랑방 사이에는 모두 4분합 들문을 달아서 필요시 들어 올려 확 트인 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랑대청과 양측방 사이에는 맹장지에 팔각형 교살 불발기가 장식되어 있어 돋보인다.

안채는 중문간행랑채의 수인문과 사랑마당 좌측의 정추문(正秋門)으로 출입할 수 있다. 좌측 끝에 누마루 1칸이 돌출해 있고 그 뒤로 안방 2칸이 이어지고, 안방 우측으로 2칸 안대청·2칸 건넌방·1칸 마루방이 차례로 놓여 있다. 마루방은 사랑채의 침방과 연결되어 있는데, 안방에서부터 침방에 이르는 실간에 달려 있는 들문을 모두 열면 일직선을 그리며 한 공간으로 변한다. 이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궁정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합리적 공간 구성이라 여겨진다. 안채의 창호는 사랑채와는 달리 평범한 띠살문으로 사랑채가 안채보다 상위 공간임을 읽게 한다.

사랑채와 안채의 구조양식은 전 바닥 화강암 장대석 기단 위에 방형 초석을 놓고 모두 방주를 세운 장혀수장 민도리집이다. 쪽마루의 동자주와 초석을 팔각형으로 다듬은 것은 세심히 공들인 궁전건축의 정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랑채의 누마루와 사랑대청 배면은 특별히 쪽소로로 장식하여 위상을 높였다. 상부가구는 5량 가로 대량 위에는 동자주가 종보를 받고 있으며, 종보 위에는 제형판대공이 놓여 있다. 사랑채는 종도리 밑에 뜬창방처럼 견실한 뜬장혀를 둔 것과는 달리 안채에는 뜬장혀가 없다. 이 또한 사랑채가 상위 공간임을 엿 보게 한다. 전체적으로 부재의 치목과 가구 및 맞춤 등의 기법은 궁전건축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다. 옥개부는 흘처마 팔작지붕으로 사랑채 지붕이 안채보다 좀 더 높게 하였는데, 이는 사랑채 장양문을 안채 수인문보다 높게



한 것과 같이 공간적 위계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선향채는 정면 7칸, 측면 2칸 규모로 가운데 3칸은 대청이고 그 좌·우 2칸은 온돌방이다. 전면에는 1칸 정도 폭을 가진 긴 이색적 차양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차양을 사대부가에서는 강릉 선교장(중요민속문화재 5호)의 큰 사랑채인 열화당에서 유일하게 찾아 볼 수 있다. 차양은 목구조형식으로 본 건물과 튼튼하게 가구하고 정면 위쪽에 정자살 차양 창을 달아서 도르래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대공은 영천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국보 14호)과 닮은 고식이고, 양봉과 박공의 계눈각 등 세부양식 수법이 섬세하고 뛰어나다. 측면의 벽체는 하부의 아궁이 부분은 화강석으로 쌓고 그 위로는 적벽돌을 정교하게 쌓고 중앙에 무시무중 등의 기하문양을 넣어 화사하게 꾸민 모습은 궁전건축의 품위를 엿 보게 한다.

선향채 뒤편 화계 위의 높은 곳에 자리 잡은 농수정은 단칸 규모의 후원 별정이다. 네 면은 벽체 없이 4분합 굽널완자살 들문을 달았다. 내부는 마루로 구성하고 사방에는 쪽마루를 깔고 법수가 있는 아자 교란을 돌렸다. 구조양식은 화강암 장대석 기단 위에 방형 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운 물익공 겹처마 사모지붕 집이다. 물익공은 단부를 두리 몽실하게 하고 면에다 당초문양을 초새김하였다. 농수정은 아름다운 곡선미를 지닌 지붕과 함께 외관의 전체적인 비례감이 뛰어나며, 굽고 세밀하게 다듬은 문살과 난간 등이 돋보이는 정자로 궁전의 다른 정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5. 가** : 연경당은 이중 행랑채, 사랑채와 안채의 엄격한 내외공간 구분, 높이를 달리한 사랑채와 안채의 출입문과 지붕, 사랑채와 안채의 효율적 공간 이용을 위한 합리적 평면구성, 격을 달리한 사랑채와 안채의 창호형식, 안채의 부엌대신 둔 별곽의 반빗간, 뛰어난 수법으로 꾸민 흔치 않은 차양시설을 갖춘 큰 서채와 정자의 기능적 상호 연계성을 헤아려 구성한 공간체계 등이 돋보인다. 뿐만 아니라 궁전의 조영법식에 따라 세련되게 꾸민 가구와 세부양식도 궁전건축 고유의 품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연경당 일곽은 궁궐 안에 사대부가와 유사하게 지은 귀한 집으로 용도상으로는 모호한 점이 있으나 사대부 주택형식과 차별성을 띤 궁전건축 특유의 옥내외 공간 구성과 수준 높은 면모를 잘 보존하고 있어 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b>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b>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창덕궁 연경당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직위(직책)	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창덕궁 연경당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별첨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별첨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첨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현행에 따름 <보호물> 현행에 따름 <보호구역> 현행에 따름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현행에 따름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별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2011년 11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div>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 입지

주합루와 영화당 구역을 감싸고 있는 작은 능선을 지나면 기오현과 의두각이 나타나고 이것을 지나서 계속 들어가면 작은 골짜기에 남향하여 연경당이 자리잡고 있다. 입지를 보면 사면이 능선으로 감싸여 있는 형국인데, 동쪽의 능선이 끝나는 지점에 애련지를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애련지 앞으로 진입동선이 형성되어 있다.

연경당의 동남쪽에 나있는 불로문을 들어서면 우측에 방형의 애련지가 있고, 전면에 마당이 형성되었으며 이 마당을 지나면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연경당이 보인다. 연경당 앞에는 작은 방지를 조성하여 대문인 장락문 앞을 지나는 수로를 통하여 방지에 물이 모이도록 조성하였으며, 이 수로에 간단한 석교를 설치하여 석교를 건너 장락문으로 들어서게 동선을 유도하고 있다. 연경당의 주변 환경은 아름다운 숲과 연못 및 정자 등이 어우러져 이상적인 경관을 이루고 있다.

### - 배치

연경당은 넓은 대지 위에 공간의 구분을 주기 위해 바깥마당과 안마당을 구획하여 내부 공간 변화의 색다른 정취를 느끼게 한다. 연경당의 남쪽과 서쪽 그리고 북쪽 3면에는 수로를 배치하고 남쪽의 정면 입구에 평석교를 놓았으며, 이 석교 옆에는 괴석을 심어놓은 석함이 있고, 다리 건너 전면에는 바깥행랑채를 배치 하였다. 이 행랑채는 솟을대문인 장락문을 중심으로 오른편은 판장벽으로 마감하였으며, 왼편은 사고석을 쌓은 방화벽으로 되어 있어 긴 행각의 입면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바깥행랑 가운데의 솟을대문인 장락문을 들어서면 좌우가 긴 행랑마당이 있고, 중문인 장양문과 수인문이 있는 중문간 행랑채가 앞을 가로 막는다.

이 2개의 문 중에서 우측의 솟을대문인 장양문은 사랑채로 통하고, 이 문을 지나 사랑마당에 들어서면 좌측에는 안마당과 사랑마당을 경계짓는 담장이 꺾여 있으며 담장 가운데에 문인 정추문이 있다. 그리고 좌측의 평대문은 안채로 통하는 수인문이다.

마당의 담으로 사랑채와 안채가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한번 꺾여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전체 공간구성은 서로 연결된 만(卍)자 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경당이란 이름은 원래 사랑채를 가리킨 것이었으나 지금은 이 건물들을 통틀어 연경당이라 부르고 있다. 사랑채의 오른편으로는 서재 구실을 하는 선향채가 위치해 있으며, 선향채 뒤편의 경사진 언덕에는 화계를 설치하고 제일 높은 곳에 농수정을 배치하였다. 또한 안채의 후면에는 담으로 구획된 반빗간이 있어 이들로 건물군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

안채 전면과 좌측면은 행랑방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우측은 건물 앞뒤로 담장을 쌓아 사랑채와 경계를 이루었다. 후면으로는 담을 두르고 그 뒤에 일각문으로 통하는 별채의 부속인 반빗간을 두고 있다.

## ○ 연혁·유래 및 특징

### - 연혁·유래

‘연경(演慶)’은 경사가 널리 퍼진다는 뜻이다. 『궁궐지』에는 순조 28년에 총 120칸으로 건립하였다고 기록이 있고, 『동국여지비고』, 『한경지략』에는 순조 27년 건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연경당은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를 위한 잔치를 베풀고자 1827~8년(순조 27~8)경 지은 효심이 담긴 집이다. 창건 직후 연경당에서는 효명세자가 신하를 접견하거나 진작례를 거행하였다. 현종 대 이후에는 익종(효명세자)의 어진과 모훈을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되다가 1857년(철종 8)에 터가 서늘하고 습하다는 이유로 익종의 초상화를 다른 곳으로 옮겨 한 동안 빈 집으로 남아 있었다. 그 후 고종 대에 이르러 외국 공사를 접견하고 연회를 베푸는 등 중요한 정치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연경당은 조선 순조 28년에 당시 왕세자로서 섭정하던 익종이 민간의 사대부가를 참고하여 궁궐 안에 지은 민가풍의 건물로 속칭 99칸 집이라 여겨 왔으나, 여러 면에서 전통 상류주택과는 다른 궁궐 제택이며 또한 여러 색다른 기록문헌들이 있다. 궁궐지(고종대 발간본으로 추정)에는 이 건물의 규모를 "사랑채 14칸, 북쪽의 농수정 1칸에 북행각, 서행각, 남행각이 둘러싸고 그 밖에 외행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 또한 순종 때의 도면인 동궐도형에는 현재의 연경당과 같은 모습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동궐도에는 지금의 모습과 달리 'ㄷ'자 모양의 칠이 되어 있지 않은 안채에 연경당이라 명기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개금재가 그려져 있는데, 그 위치도 지금의 주합루 언덕 뒤편(북쪽)이 아니라 서쪽에 위치해 있다. 이런 모습은 다른 궁궐지(현종대 간행)에는 "연경당은 개금재의 서쪽에 있고 남쪽이 장락문인데 바로 진장각의 옛터이다. 순조 28년(1828) 익종이 춘저에 있을 때에 개건하여 지금은 익종의 영진을 모시고 있다." 하였으니, 이는 동궐도의 내용과 같고 그 쓰임새도 현재와는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아도 "현종 3년에 임금이 월근문, 요금문에 나아가 순종대왕과 익종대왕의 어진을 주합루 연경당으로부터 경모궁 망묘루, 경우궁 성일헌으로 옮겨 봉안할 때 친히 지송(祗送)을 행하였다." 라는 기록이 실려 있다.

따라서 이전의 연경당과 현재의 연경당이라는 별개의 연경당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현재 연경당의 건립 연대도 다시 고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건축적 특징

사랑채 건물은 장대석기단 위로 사다리꼴의 초석에 네모기둥을 세우고 평주 위에는 장여가 도리를 받고 있는 굴도리집이다. 고주에는 창방 위로 교창에 별에는 분합 위로

소로를 놓아 도리와 장여를 받도록 하였다. 대들보와 퇴량의 높이는 같고 대들보 위에는 동자주를 놓아 종량을 받았고, 중도리를 엮고 종구성은 대청에서는 연등천장이고 방에서는 종이로 천장을 마감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안채는 납도리로 되어 있으나 사랑채는 굴도리로 되어 있다는 점과 안채, 사랑채 모두 각기둥을 사용했다는 점으로 조선시대의 남녀유별과 가옥규제에 대한 법령을 충실히 따랐음을 볼 수 있다. 사랑채의 앞에는 수레나 말을 타고 내릴 때 발을 딛도록 만들어 놓은 디딤돌인 하마석이 있다.

이곳 사랑채 평면은 정면 6칸, 측면 2칸으로 정면 6칸 중 맨 우측에 누마루가 있고 가운데 4칸은 뒷간을 개방하였는데, 4칸 중 우측 2칸이 대청이고 좌측 2칸이 방이며 맨 좌측은 마루이다. 그리고 안채에서 뻗어나온 온돌방 2칸은 이 마루 뒤로해서 사랑방에 1칸이 연결되어 있다. 안방의 서쪽과 뒤편으로는 사랑채까지 쪽마루가 연결되어 있어 안채에서 사랑채, 사랑채에서 안채로 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경계부분에는 판문을 달아서 개폐할 수 있게 하였다.

안채의 구조는 사랑채보다 격을 낮추기 위해 도리가 납도리인 점이나 장여가 생략된 것, 그리고 고주도 사랑채의 그것보다 약간 낮은 점이 다를 뿐이지 연결되어 있는 사랑채와 거의 같다. 평면구성에 있어서는 왼쪽 끝에 루 1칸이 있으며 전면에 반 칸의 뒷마루가 대청에 나 있다. 평면구성에서 특이한 것은 사랑방에서 안방까지 장지문을 개방해 놓으면 일직선상으로 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이다.

선향채는 정면 7칸, 측면 2칸으로 중앙 3칸은 대청이고 좌우 2칸은 방이며 전면에는 차양이 설치되어 있다. 이 건물은 차양과 측면의 벽체가 특이한데, 차양은 가는 기둥을 전면에 여덟 개 세우고, 각 기둥 상부에서 창방을 본 건물에 보내어 그 위로 간단한 지붕을 따로 얹어 본체 지붕과 연결시켰고, 측면 벽체는 하단의 아궁이 부분은 화강석을 쓰고 그 위에서 박공부분까지 벽돌을 쌓고 중앙에 정방형의 기하문양을 넣어 장식한 것 등이 궁궐 안의 제택으로의 품격이 돋보이나 중국적인 분위기가 있다.

농수정은 연경당 깊숙이 들어앉은 후원의 절정으로서 정면, 측면 각 1칸의 정방형 평면으로 단층 사모기와 지붕을 한 이익공 집이며 처마는 겹처마이다. 이 정자는 장대석 기단의 사다리꼴 초석 위에 네모기둥을 세웠고 기둥 사이는 벽면없이 만(卍)자 무늬의 사분합문을 달았다. 천장은 우물천장이고 내부는 마루로 되어 있으며, 기둥 밖으로 쪽마루를 깔고 법수가 있는 조그만 난간을 둘렀으며, 앞면과 측면은 출입을 위하여 난간을 끊어 돌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였다. 네모기둥에는 각각 주련이 달렸고 지붕 정상에는 절병통을 두었다. 원래부터 단청을 하지 않은 듯 백골집으로 되어 있으나 날아갈 듯한 지붕곡선과 아름다운 외관의 비례, 섬세한 문살, 뒷마루 난간 등으로 정자 건물 중에서도 뛰어난 건물이다. 정자의 전면에는 작은 마당을 두고 돌난간을 설치하였다.

이곳은 경사진 지형에 장대석의 작은 돌로 화계를 꾸미고 그 사이에 돌계단을 설치하여 아름답게 조원하였다.

### ○ 지정가치

연경당은 건물배치, 공간구성 등에서 당시의 유교적 철학이 적용된 궁궐 내 사대부 집으로 당시의 주택과 비교해 볼 수 있는 한국주택사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궁전의 조영법식과 기술력으로 건축되어 세련되면서 단아한 세부양식이 궁궐건축 고유의 품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연경당은 조선시대 궁궐 내 사대부 건축으로서 그 가치가 뛰어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0. 창덕궁 영화당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창덕궁 영화당」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창덕궁 내 건조물문화재인 영화당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창덕궁 영화당(昌德宮 映花堂)
  - 소유자(관리자) : 국유(문화재청 창덕궁관리사무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번지 창덕궁(사적 제122호)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양 식 : 1층 팔작지붕/정면 5칸, 측면 3칸, 겹처마, 이익공
  - 구 조 : 목조와가
  - 수 량 : 1동

### 라. 현지조사의견('11.10.05)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부결
  - 지정가치 미흡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2012.01.16	대상문화재	창덕궁 영화당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문화재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창덕궁 영화당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p>창덕궁 후원 초입에 있는 부용지에 인접하여 동측에 자리한다. 영화당은 동쪽으로는 터진 넓은 마당을 통해 창경궁이 보이고 서쪽으로는 부용지와 부용정이 바로 앞에 자리 한다. 영화당 월대와 마당에서는 임금이 친견하는 어전시가 실시되었다. 높은 월대와 기단 위에 세워진 영화당 안에서는 동측의 넓은 마당이 훤히 내려다 보인다.</p>		
	④ 연혁·유래 및 특징	<p>광해군때 창건하여 숙종18년(1692)에 재건되고, 정조때 부용정 일대가 개축되면서 부용정·영화당·주합루 등이 활발히 활용되었다. 동궐도에는 영화당 남측에 행각과 담장이 있고 선춘문이 설치되어 있어, 부용지가 영화당의 전용 후원처럼 보인다.</p> <p>정면5칸, 측면3칸, 이익공 양식에 단층, 겹처마, 기와 팔작지붕이다. 월대와 기단을 오르는 중앙계단은 좌우의 계단 폭보다 2배 이상 넓게 한 것이 색다르다.</p> <p>4각초석위에 각주를 세우고 이익공과 뿔목 화반의 초각이 화려하다. 전면의 퇴칸은 밖으로 계자난간을 두르고 통로로 하여 개방되어 있으며, 후면(부용지방향)의 퇴칸은 통로로 개방되었으나 난간은 설치되지 않았다. 퇴칸 안쪽으로는 4방향 모두 띠살창분합문으로 하고, 중앙2칸의 대청에는 교창을 두었다. 북측의 2칸은 온돌방으로 하고, 대청쪽으로는 살창분합문을 설치하였다. 퇴칸에는 연등천정이고 대청과 방에서는 우물천정에 화려한 단청으로 장식했다.</p> <p>5량구조로 내부의 고주가 종보와 중도리를 받고, 종보중간에서 동자주형의 대공으로 중도리를 받는 단순한 구조이다.</p>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⑦문화재 보존 영 향 행위기준안	
검토	⑧보존정비 및 활 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p>기단·월대·마당의 특이성은 있으나 영화당의 단순한 구조와 형식은 평범하다. 단청이 화려하나 부재의 의장성과 부재짜임새도 평범한 건축으로 사료된다.</p> <p>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는 부적합하다.</p>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2년 1월 17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창덕궁 영화당	
조사자	성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문화재위원
주요 지정 사항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창덕궁 영화당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p>영화당은 부용지의 오른쪽에 남북으로 길게 동향하고 있다. 숙종이 왕자와 왕손을 모아 이곳에서 꽃구경을 하고 시를 쓰기도 했으며, 영조는 공신들에게 시를 지어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순조 연간에도 문무신하가 모여 시예를 벌이기도 했다.</p> <p>건물의 동쪽 앞마당은 춘당대(春塘臺)의 일부로서 정조 이래로 왕이 친히 납시어 선비들이 과거를 볼 때 차일을 치고 임어 했다고 한다. 또한 활쏘기와 종친이나 군신간의 모임 등 대규모 행사의 주공간으로도 사용하였다. 동쪽 처마에 게액한 현판은 영조가 1754년에 쓴 어필이다.</p>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별첨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첨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별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5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4. . : 창건 시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선조가 1572년(선조 5)에 춘당대에서 과거를 볼 때 영화당에 차일을 치고 임어했다는 기록과 광해군이 이곳에서 꽃을 구경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 이전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숙종 18년(1692)에 재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화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이지만 사방을 반 칸 규모의 툇간이 에워싸고 있다. 북면 쪽으로 1.5칸 온돌방을 두고 그 앞쪽으로는 2칸 대청을 배열하고 이들 주위에 툇마루를 깔았다. 대청의 세 면에는 완전히 개방할 수 있는 4분합 들어열개 문을 설치하여 바깥의 절경 감상과 더위를 식히는 통풍이 되게 했다. 안쪽 온돌방에도 북쪽 면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들문을 달아서 대청의 들문을 들어올리면 한 공간으로 통합 되면서 대청처럼 상경과 피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정면인 동쪽면과 남·북쪽면에는 계자각 난간이 돌려져 있다.

건물은 지대가 낮은 동쪽과 남·북쪽 일부에는 먼저 화강암 장대석으로 높게 쌓고 그 위에 또다시 기단을 쌓아서 방형의 정평 초석을 놓고 모두 네 모 기둥을 세웠다. 정면인 동쪽에는 오름 계단이 3개이고 나머지는 한 두 개씩 설치되어 있다. 공포는 날렵하게 뺀 이익공으로 주두와 두 익공살미와 행공이 짜여 지고 바로 위에 채주두가 접 놓여있다. 익공살미와 행공의 밑 단면은 연화두로 장식하고, 화반은 익공살미처럼 양측 단면을 연화두로 초각하고 가운데에 소로 하나를 놓았다. 천장은 툇마루만 연등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물반자로 꾸몄는데, 대청 반자는 소박한 온돌방과 달리 화려하게 단청을 도채하였다. 상부가구는 5량 가로 고주와 고주는 대량으로, 고주와 평주는 퇴량으로 가구되어 있다. 단청은 모로 단청을 시채하고, 팔작지붕의 용마루에는 취두를 놓고, 합각마루는 용두로 장식하였다.

5. 가 : 영화당은 선비들이 과거를 볼 때 차일을 치고 임어 하고 활쏘기와 종친이나 군신간의 모임 등 대규모 행사의 주공간으로 사용한 특수 용도의 다목적 건물이다. 건축적으로는 왕이 과거 시험을 보는 동쪽 앞마당의 춘당대를 부감하고 부용지와 그 주변의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평면을 편방식으로 구성하고 들문을 설치하여 기능을 충족시킨 점은 주목되지만 구조양식 전반을 두고 볼 때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

<b>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b>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창덕궁 영화당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직위(직책)	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창덕궁 영화당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별첨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별첨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첨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현행에 따름 <보호물> 현행에 따름 <보호구역> 현행에 따름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현행에 따름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별첨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1년 11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p> <p><b>문화재청장 귀하</b></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영화당은 부용지의 오른쪽에 동향하여 자리잡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터진 넓은 마당을 통해 창경궁이 보이고 서쪽으로는 부용지와 부용정이 바로 앞에 자리 한다. 동궐도에는 영화당 남측에 행각과 담장이 있고 선춘문이 설치되어 있어, 부용지가 영화당의 전용 후원처럼 보인다.

## ○ 연혁·유래 및 특징

### - 연혁·유래

영화당의 창건 시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광해군 일기』 영화당을 짓는 일을 논의한 기록이 있어 광해군 때 처음 지어진 것을 알 수 있고, 『궁궐지』에는 숙종 18년에 ‘옛터를 고쳐지었다’는 기록이 있어 숙종 18(1692)에 개건한 집임을 알 수 있다. 이곳은 숙종이 왕자와 왕손을 모아 꽃 구경을 하고 시를 쓰기도 했으며, 영조는 공신들을 인견하고 시를 내리기도 했고, 『순조실록』에는 어전시(御殿試)를 치룬 기록이 있다. 또한 건물 동쪽의 앞뜰은 춘당대의 일부로서 정조 이래로 왕이 친히 남시어 과거를 관망하던 과거장이기도 했었다. 이곳의 당액은 영조의 어필이다.

### - 건축적 특징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단층 팔작기와지붕으로, 장대석으로 기단을 높이 쌓고 그 위로 삼면 뒷간을 개방한 정자 형태의 건물이다. 평면은 북쪽의 1칸만을 온돌로 꾸미고, 가운데 2칸의 대청과 3면의 뒷간은 마루를 깔았다. 그리고 대청의 3면에는 분합문을 달아 들어올릴 수 있게 했으며, 대청 측면으로는 계자 난간을 설치하였다. 공포는 이익공으로 기둥 위에 창방을 놓고 창방 높이에 맞추어 기둥머리 밑으로 제공 침차 하나를 짜서 퇴량을 받고 있다. 또한 사각기둥 머리에는 퇴량과 도리받침 장여가 짜여지고 퇴량위로 주심도리가 놓이게 하였다. 퇴량은 고주 몸에 끼워져서 대들보보다는 낮은 곳에서 이음하였고, 하부에는 보아지를 설치하였으며, 대들보 머리 아래에는 기둥머리와 같이 짠 초공이 있어 보를 받고 있다. 중도리 아래에는 소로를 받는 행공침차가 있지만 그 행공침차는 기둥 몸에 끼게 되어 있다. 대청과 뒷간에는 우물천장을 설치하였고 처마는 겹처마이다. 양성은 하지 않았으며 용마루와 합각마루 끝에는 용두를 얹어놓았고 단청은 은근한 빛깔의 모로단청이다.

## ○ 지정가치

영화당은 조선시대 중대사가 펼쳐진 장소로 그 역사성은 인정되나 동궐도와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있고, 구조와 형식이 단순하며, 부재의 의장성과 짜임새도 평범한 건축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 41. 창덕궁 주합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창덕궁 주합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창덕궁 내 건조물문화재인 주합루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창덕궁 주합루(昌德宮 宙舍樓)
  - 소유자(관리자) : 국유(문화재청 창덕궁관리사무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번지 창덕궁(사적 제122호)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양 식 : 2층 팔작지붕/정면 5칸, 측면 4칸, 겹처마, 이익공 누각건물
  - 구 조 : 목조와가
  - 수 량 : 1동

### 라. 현지조사의견('11.10.05)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지정가치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2012.01.16	대상문화재	창덕궁 주합루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문화재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창덕궁 주합루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p>창덕궁 후원으로 들어서면 부용지에 인접된 북측 구릉위에서 좌·우로는 수림과 언덕으로 가려지고 남측으로는 부용지와 부용정을 내려다보도록 이루어진 6개의 기단을 올라야 된다. 첫 번째 어수문을 오르는 기단에는 3개의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계단에는 소맷돌이 설치되어 있다. 주합루에 오르는 6번째 기단에도 중앙계단은 소맷돌이 설치되어 있으나, 소맷돌 측면의 구름양각이 첫 번째 계단보다 더 많이 장식되어 있다. 이것은 임금의 전용계단으로서 상징적인 의장으로 임금이 자주 활용하는 기능의 건물을 의미한다.</p>		
	④ 연혁·유래 및 특징	<p>주합루는 정면5칸, 측면4칸, 중층의 누각건축형식이며 이익공, 겹처마 팔작 기와 지붕이다.</p> <p>정조가 즉위한 해(1776년)에 건립된 것으로 왕실의 도서관 기능을 가진 규장각으로서 서고 및 열람실로 활용되었다. 정조를 보좌하던 중신들의 연구 및 정책토의를 하던 건물이기도 했다. 규장각 현관은 정조의 친필이다.</p> <p>1층과 2층의 사방4면의 퇴칸은 통로로 하고 바깥쪽으로 개구부가 벽체가 없이 난간으로 둘러쳐져 있다. 퇴칸 안쪽으로 1·2층 모두 4분합 띠살창을 설치하고 그 위에 교창을 두었다.</p> <p>1층에는 퇴칸과 중앙의 대청을 우물마루로 하고 좌·우의 방은 온돌로 장판을 깔았다. 온돌방은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구들을 통해 굴뚝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닌, 북측 기단 밑으로 화로를 들여놓은 구조이다. 2층은 모두 우물마루로 하여 칸막이 없이 터진 하나의 방으로 되어 있다.</p> <p>1층 퇴칸과 내부가 모두 우물천정으로 단청을 하였다.</p> <p>2층에서는 퇴칸은 연등천정이고, 내부에는 단청이 된 우물천정이다.</p>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p>부용지, 부용정이라는 인공적인 선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장소성이 특별하다. 임금의 전용계단을 설치하고, 각주로 세워진 누각형식이 7량구조 건물로서 계자난간을 1·2층 4방으로 두르고, 천정속에서 안보이는 대공의 의장성이나 보머리 화반 및 이익공 등의 초각과 내외부 단청은 정전이나 편전의 의장성과 버금가는 최고급 건축이다.</p> <p>누각건축형식이면서 1층을 내부화하고 우물마루로 하고 계자난간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방형의 초석에 방주를 사용하고 띠살창 4분합문으로 외관의 모습이지만, 구조부재나 의장성 부재들의 짜임새가 최고의 기술이며 초각 및 단청도 궁궐건축의 최고미를 보이고 있다.</p>
⑥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p>궁궐 내에서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후원에 자연과 인공자연의 선경안에서 연구하고 토론하며 임금과 신하가 학문과 개혁정치를 일군 역사성과 건축의 외형적 소박과 내면의 권위적·호화성 초각 및 단청이 특이하며, 부재의 짜임이 명확하고 부재의 의장성은 궁궐건축의 우수성이 인정된다.</p> <p>보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p>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2년 1월 17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창덕궁 주합루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문화재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창덕궁 주합루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주합루는 부용정 맞은편 높은 곳에 부용정과 대향하여 남향으로 앉아있다. 정문인 어수문을 들어서서 화계로 꾸민 석축 5단을 올라서면 누각에 이른다. 좌측으로는 書香閣이 있으며, 뒤편 2단의 석축 위에는 ‘霽月光風觀’이라는 편액이 걸린 주택풍의 작은 건물이 있다. 서향각 뒤쪽 높은 곳에도 喜雨亭이란 작은 정자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주합루의 아래층은 규장각이라 하여 왕실의 도서를 모아두고 어진을 봉안하는데 사용하였고 위층은 규장각의 상누이다. ‘奎’는 28수의 별자리 중 문운을 관장하는 별이고, ‘章’은 ‘글’ 혹은 ‘밝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奎章’은 왕의 글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규장각’은 좁은 의미에서는 왕의 어제·어필 등을 보관하는 서고를, 넓은 의미에서는 당대의 학문이 집결된 곳을 뜻한다.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별첨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첨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별첨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2년 5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p> <p><b>문화재청장 귀하</b></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4. . : 『궁궐지』의 기록에 의하면 원래 ‘규장각’은 1694년(숙종 20)에 종부사에 세운 조그만 건물의 이름이었다. 규장각의 기능과 의미가 당대 학문의 중추기관으로 확장된 때는 정조의 재위기로 정조는 즉위년(1776)에 창덕궁 후원에 어제·어필을 보관할 2층 건물을 짓고 세조 대 건의된 제학과 직제학, 대교 등의 직책을 두었다. 위층은 세손시절 사용하던 경희궁 주합루의 이름을 그대로 쓴 어필 현판을 걸고, 아래층에는 숙종 어필의 규장각 현판을 걸게 했다. 1층 규장각은 왕실도서관 및 근시기구로, 2층 주합루는 열람실로 활용되었다.

규장각의 제도가 1781년(정조 5) 완성되면서 국내외에서 수집한 학문을 복합적으로 주관하는 조선의 정책 연구와 학문의 중추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단순한 어제·어필의 간행과 관리를 넘어서 기존의 학문을 총망라하여 정리하고 청나라를 통해 중국과 서양의 신문물을 수집하였다. 또한 초계문신강제라는 젊은 문신들의 재교육·시험제도를 통해 조정인사들의 능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왕·세자의 교육활동인 경연·서연까지 주관하여 당대 문예의 비약적인 발전을 주도했다.

비록 정조 사후 그 기능이 축소되고 일제 강점기를 전후로 해체되었으나 규장각의 발달은 조선 후기의 왕권강화와 학문 발전 그리고 신문물 도입의 활성화와도 그 맥을 같이하였다. 이곳은 정조대에 박지원의 제자들인 박제가·이덕무·유득공·서이수 등이 정조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신문물인 북학 도입에 큰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18세기 고금의 학풍과 문화를 비판적으로 재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의 새로운 문물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수용할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고종은 친정 초기인 1874년 정조 대의 규장각 제도를 부활 시키고 서양 문물 관련 자료를 수집·연구하게 하면서 개화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주합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중층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아래층과 위층 모두 내부에 사방을 외진주에서 1칸씩 물려서 내진주를 세우고 정면 3칸, 측면 2칸의

내실을 만들고 주위는 퇴청이 되게 했다. 퇴청 둘레에는 고급스럽게 초각한 계자각 난간이 둘러져 있다. 아래층 내실은 가운데가 마루이고 그 좌우는 온돌방이며, 위층 내실은 모두 마루이다. 온돌방은 규장각의 서고와 독서 공간으로 사용한 기능에 따른 구성이라 여겨진다. 내실의 네 면은 4분합급널띠살 들문을 달아 필요시 사방을 개방할 수 있게 했다. 위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좌우측면 뒷간 맨 뒤에 각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

건물은 네 벌대 화강석 장대석 기단 위에 놓고 오르는 석계를 정면에는 3개, 나머지는 각기 1개씩 두었다. 정면의 3개 중 중앙 계단은 미려한 곡선으로 뻗어 끝이 회오리형으로 장식된 소맷돌이 권위적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데, 소맷돌의 측면에는 와운문을 새기고 그 아래 받침돌에는 초화문을 새겼다. 기단 위에 기둥은 궁전건축 답게 모두 통재가 세워져 있다. 외진평주는 방형 초석을 놓고 방주를, 내진고주는 원형 초석에 원주를 세웠다. 공포는 이익공으로 주두와 두 익공살미와 행공이 짜여 지고 그 위에 채주두가 놓이고 운공으로 장식되어 있다. 익공살미와 행공의 밑 단면은 연화두로, 살미의 양측면은 초엽 선각으로 세련되게 장식하였다. 기둥 사이에 놓인 화반은 익공살미처럼 양측 단면이 연화두와 초엽으로 선각되어 있고 가운데 소로 하나가 장혀를 받고 있다. 천장은 위층 뒷간만 연등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우물반자로 꾸몄다. 상부가구는 7량 가로 고주와 고주는 대량으로, 고주와 평주는 퇴량으로 가구되어 있다. 단청은 모로 단청을 시채하고, 지붕의 용마루에는 취두를 놓고, 귀마루는 잡상으로 장식하였다.

5. 가 : 규장각은 정조 대에 확장되면서 2층 건물을 지은 후 고종 대에 이르기까지 발전과 축소·해체·부활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의 정책 연구와 학문의 중추기관, 중국과 서양의 신문물 수집, 조정 인사들의 능력 향상, 왕과 세자의 경연과 서연 주관, 개회정책 추진 등이 이루어진 학문 발전과 정책 개발의 산실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건물은 기능에 충실하게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부용정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부감 조망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높은 지대에 퇴청을 둔 흔치 않은 중층구조로 공간을 구성한 점이 돋보이며, 또 세부 양식적으로도 궁전건축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다.

따라서 규장각은 조선 후기의 왕권강화, 학문발전, 신문물도입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역사적 가치가 클 뿐 아니라 건축적으로도 특수용도의 공간구성 등이 뛰어난 중층구조로 보물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b>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b>				
조사일	2011.10.05	대상문화재	창덕궁 주합루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직위(직책)	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창덕궁 주합루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별첨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별첨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첨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현행에 따름 <보호물> 현행에 따름 <보호구역> 현행에 따름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현행에 따름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별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2011년 11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div>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창덕궁 후원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건물군으로 부용지와 부용정, 영화당, 주합루가 있는데, 이 중에 북쪽 높은 위치에 주합루가 있다.

주합루 주변 현황을 보면 남쪽 언덕에는 3단의 화계(花階)를 설치하고 꽃을 심고 수석을 배치하여 정원을 꾸며 놓았으며, 화계 첫단에는 어수문(魚水門)을 두고 계단을 설치하여 주합루로 오를 수 있도록 하였다. 주합루의 정문인 어수문은 임금을 물에, 신하들을 물고기에 비유하여 군신의 융화적 관계를 함축한 뜻이 담겨 있다. 어수문은 임금만이, 그 옆 작은 문(협문)으로는 신하들이 출입하였다.

남쪽에는 연못이 있는데 가운데에 섬 하나가 있고 연못 남쪽에는 부용정이 자리잡고 있다. 연못의 서측에는 서정기비각(西井記碑閣)이 있다. 주합루의 왼쪽으로는 서향각(書香閣)이 있으며 주합루의 뒤 2단의 석대 위에 제월광풍관(霽月光風觀)이라는 편액의 작은 건물이 있다. 서향각의 뒤 높은 곳에 희우정이 있다.

이 일대에 대한 <동궐도(東闕圖)>의 묘사는 현재보다 건물이 더 있었음을 알려준다. 즉 영화당의 남쪽으로는 행각(行閣)이 있고 그 사이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어수문 좌우로는 담장이 길게 있었고, 서향각 서쪽의 높은 지대에도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어수문 좌우의 작은 협문으로 넝쿨을 말아 올리는 시설을 하여 여기에 푸른 식물들이 뒤덮여 있어 마치 푸른 병풍을 둘러놓은 듯하다. 이런 시설물 곧 취병은 "동궐도"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곳 어수문 양쪽에서와는 달리 그 길이가 짧고 전각의 안뜰에 설치되었다. 어수문 양쪽으로 둘러친 긴취병은 어수문 위쪽 주합루의 공간과 부용정 부용지의 아래 공간을 커다란 2개의 공간으로 갈라 놓는 역할을 한다.

## ○ 연혁·유래 및 특징

### - 연혁·유래

주합루는 정조시대 정책 개발 및 개혁정치의 산실로 다양한 인재들이 활동한 공간으로 2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층에는 왕실 도서관이자 학문 연구 기관이었던 규장각을 두고, 그 위층은 열람실로서 사방의 빼어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누대가 있다.

규장각은 세조 때에 일시 설치되었으나 폐지된 바 있었으며, 1694년(숙종 20)에는 세조가 친히 쓴 규장각이라는 액자를 종정사의 환장각에 봉안하고 역대 국왕의 어필 어제를 보관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후 정조가 즉위하면서 외척과 환관들의 역모와 횡포를 누르기 위한 혁신정치의 중추로서 설립되어 단순한 서고의 구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정조는 뒤에 '승정원이나 홍문관은 근래 그 선법이 해이되어 종래의 타성을 조속히 지양할 수 없으니 왕이 의도하는 혁신정치의 중추로서 규장각을 수 건하였다.'고 설각취지를 밝힌 바 있다.

위층은 세손시절 사용하던 경희궁 주합루의 이름을 그대로 쓴 어필 현판을 걸고, 아래층에는 숙종 어필의 규장각 현판을 걸게 했다.

규장각의 제도가 1781년(정조 5) 완성되면서 국내외에서 수집한 학문을 복합적으로 주관하는 조선의 정책 연구와 학문의 중추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단순한 어제·어필의 간행과 관리를 넘어서 기존의 학문을 총망라하여 정리하고 청나라를 통해 중국과 서양의 신문물을 수집하였다. 또한 초계문신강제라는 젊은 문신들의 재교육·시험제도를 통해 조정인사들의 능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왕·세자의 교육활동인 경연·서연까지 주관하여 당대 문예의 비약적인 발전을 주도했다.

비록 정조 사후 그 기능이 축소되고 일제 강점기를 전후로 해체되었으나 규장각의 발달은 조선 후기의 왕권강화와 학문 발전 그리고 신문물 도입의 활성화와도 그 맥을 같이하였다. 이곳은 정조대에 박지원의 제자들인 박제가·이덕무·유득공·서이수 등이 정조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신문물인 북학 도입에 큰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18세기 고금의 학풍과 문화를 비판적으로 재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의 새로운 문물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수용할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고종은 친정 초기인 1874년 정조 대의 규장각 제도를 부활 시키고 서양 문물 관련 자료를 수집·연구하게 하면서 개화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 - 건축적 특징

정문인 어수문을 들어서서 여러 단의 돌계단을 딛고 올라서면 1층 규장각 어간으로 연결된다.

기단은 네벌대의 장대석을 바른층 쌓기하고 맨 위의 갑석에는 쇠시리를 넣어 마무리하였다. 건물에 오르는 계단은 정면 3개, 측면 2개, 배면에 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면의 3개 계단 중 중앙 계단은 임금이 출입하는 계단으로 장식된 소맷돌을 설치하여 권위적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소맷돌의 측면에는 와운문을 새기고 그 아래 받침돌에는 초화문을 새겼다. 배면 기단에는 1층 방으로 불을 넣기 위한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다.

기단 위에는 다듬은 방형초석을 놓고 기둥을 설치하였는데, 하늘과 땅의 조화로운 이치를 상징하듯 밖으로는 방주를 세우고 안쪽으로는 두리기둥을 세웠다.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2층 건물로 기둥은 모두 상하층 통주로 사용하였고, 사방을 외부 기둥에서 1칸씩 물려서 퇴를 두었으며, 내부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구성하였다. 아래층 내실은 가운데가 마루이고 그 좌우는 온돌방인데, 마루와 방 사이에는 문인방과 문선 그리고 들문을 걸기 위한 삼배고리가 남아있어 문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문은 남아있지 않다.(향후 문 설치 여부에 대한 고증이 필요하다) 위층 내실은 모두 마루이고, 세칸을 하나의 실로 사용하고 있다. 상하층 모두 한 칸 넓이의



퇴청을 사방으로 돌려 서고에 해가 들지 않도록 하였으며, 내실의 네 면은 4분합 들문을 설치하여 필요시 사방을 개방 할 수 있게 했다. 퇴청의 둘레에는 상하층 모두 아담하게 초각한 계자각 난간이 둘러져 있다. 1층 마루에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 건물에서 1층에 난간을 설치한 것은 동선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장치로 보여진다.

위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배면 좌우측에 각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

공포는 궁궐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이익공으로 주두와 익공살미, 행공이 짜여 지고 그 위에 채주두가 놓이며 운공으로 장식되어 있다. 익공살미와 행공의 밑 단면은 연화두로, 살미의 양측면은 초엽 선각으로 장식하였다. 기둥 사이에 놓인 화반은 익공살미처럼 양측 단면이 연화두와 초엽으로 선각되어 있고 가운데 소로 하나가 장혀를 받고 있다. 상부가구는 7량 가로 고주와 고주는 대량으로, 고주와 평주는 퇴량으로 가구되어 있다. 천장은 위층 뒷간만 연등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우물반자로 꾸몄다. 단청은 모로 단청을 시채하였다.

처마는 부연을 둔 겹처마이고, 지붕은 팔작 기와지붕이다. 용마루와 내림마루는 양성바름으로 마감하였고 용마루 끝에는 취두를, 내림마루에는 용두를, 추녀마루에는 잡상과 용두를 얹어 권위가 높은 건물임을 나타내고 있다.

## ○ 지정가치

정조의 정책 개발 및 개혁정치와 조선 중기 문예부흥의 산실로 정약용,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등 다양한 인재들이 활동하던 공간이며, 정조가 지은 어제, 어필, 어진, 인장 등을 보관하였던 장소로 그 원형이 잘 남아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건물은 경사진 지형의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1층은 왕실도서를 보관하기에 적절하도록 사방에 퇴를 두고 사분합들문을 설치하였고 내부는 세칸 중 양측면 2칸에 온돌을 설치하여 도서를 보관하였으며, 열람실로서 사방의 빼어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2층에 배치하여 건물의 기능에 맞는 실 배분이 충실히 반영되고 있다. 이처럼 주합루는 역사적, 건축 기술사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42. 부산 장안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부산시 기념물 제37호 「장안사대웅전」의 국가 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37호 ‘장안사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임.
- 동 사항은 2010년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 검토 시 ‘보류’된 사항에 대해 보완 후 재신청한 사항임
  - 사유 : 변형된 부분(외부단청, 지붕, 창호 등)에 대한 자료 보완, 기단 및 계단의 형태에 대해 자료 보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산광역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37호 「장안사대웅전」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598번지 외 2
- (3) 신청내용(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신청)
  - 명 칭 : 장안사 대웅전 (長安寺 大雄殿)
  -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 장안사
  - 수 량 : 1동 (정면 3칸 × 측면 3칸)
  - 재 질 : 목조 와가
  - 형 식 : 다포계 팔각지붕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sup>2</sup> )	지정면적(m <sup>2</sup> )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성명	주 소
장안리	598	종	2,407	2,407	대한불교조계종 장안사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598

## 라. 현지조사의견('12.03.26)

- 본 건물은 2010년 10월 장안사 대웅전의 보물 지정 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 검토 결과, “변형된 부분(외부단청, 지붕, 창호, 기단 및 계단 등)에 대한 원형 및 고증 자료 보완, 기타 붙임 양식(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서)에 맞게 자료 보완”하는 조건으로 보류되었고, 금번에 고증자료와 변형부분을 보완하여 재신청한 상황임.
- 변형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부산대학교 교수 서치상, 부산시 문화재위원) 자문을 통하여 보완하였고, 세부 보완사항은 다음과 같음.
  - 좌측 진입경사로는 기존 시멘트 모르타르를 해체하고, 단차에 맞춰서 자연석 계단으로 조정함.
  - 기단 바닥면과 기단석 그리고 정면 계단석의 시멘트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원래 바닥 면을 노출시키면서 함몰이 심한 부분은 강회다짐 마감하였으며, 초석의 하부를 덮고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또한 제거하였음.
  - 정면 어칸의 섬돌은 1구만 설치하고, 좌·우측 협문의 시멘트로 제작된 섬돌은 제거 후 석재 섬돌 1구씩을 설치하였음.
  - 창호의 셀로판지는 제거하고, 창호지로 교체하였음.
- 대웅전 연혁에 대한 고증기록의 조사는 천장 속에서 발견된 아래 4건의 묵서명에 대한 해석을 시행하여 건물의 건립 연대가 효종 8년(1657)에 중창되었고, 이후 영조 20년(1744)에 연목 부분의 수리가 있었으며, 1948년과 1951년에 부분적인 보수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대웅전은 1657년 중창 이후 연목 이상의 보수가 있었으나 주요구조부는 단청 등으로 보아 원래의 모습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順治十三年記宗道理墨書銘
  - 乾隆八年記 중도리 받침장여 墨書銘

- 佛紀二千九百七十四年三月日記緣化秩
- 佛紀二九七八年記 緣化秩
- 대웅전 내부 단청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양식의 특징을 범어사, 통도사, 운문사 등 경남지역 사찰과 비교 분석하여 현재의 단청이 1658년에 시행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단청안료 분석 결과에서도 건립당시 채색된 천연광물 위주의 전통안료가 잘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 또한 대웅전 후면에 있는 유구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인조8년(1631) 중창 이전의 유구와 유물을 확인하여 사찰의 역사성에 고증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장안사 관련 고증 자료와 현황을 보고서에 수록하였으며, 기장군의 중장기 관리계획을 첨부하였음.
- 이처럼 장안사 대웅전은 김방한의 장안사대웅전기와 근래에 발견된 목서명으로 건물의 중건 및 중수연대가 명확히 규명된 부산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다포식 건축물로 양곡이 강한 지붕, 정·배면의 공포짜임새, 정면의 어칸 및 좌·우 협칸의 창호 구성, 보개천장 등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 구조재와 단청이 1657년의 중창 때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 건축사,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사항

### (1) 당초 현지조사자 의견(세부내용 별첨)

- ○ ○ ○ 문화재위원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치 있음.
- ○ ○ ○ 문화재전문위원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치 있음.
- ○ ○ ○ 문화재전문위원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치 있음.

### (2) 지자체 전문가 의견(부산시 문화재위원 ○○○/2009년 3차례 현장조사)

- 이 건물은 최근 천장 속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順治十三年 記 宗道里 墨書銘> (孝宗 8년, 1657) 1건, <乾隆八年 記 宗道里 받침장혀 墨書銘>(英祖 20년, 1744) 1건, <佛紀二千九百七十四年三月日 記 緣化秩>(1947년) 1건, <佛紀二九七八年

記 緣化 秩>(1951년) 1건 등 모두 4건의 墨書銘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이상의 墨書銘을 통해서 이 건물의 건립연대는 효종 8년(1657)에 중창되었음이 확인됨. 이러한 연대는 鰲亭 金邦翰이 쓴 <長安寺大雄殿記>에 元正이 順治 甲午年(효종 5년, 1654)에 大雄殿 복구의 원을 세워 丁酉年(효종 8년, 1657)에 경영했다는 내용과 일치함.
- 또한 임진왜란 직후인 선조 32년(1599)에 機張縣이 혁파되어 동래와 울산에 나뉘서 편입되었다가 효종 4년(1653)에 당시 기장현감 강유후의 진소로 54년 만에 복원되던 시점과 일치하는 등 조영여건도 갖춰진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이후 영조 20년(1744)에 서까래 부분에 대한 수리가 있었을 뿐 이렇다 할 수리공사가 없다가 1947년과 1951년에 내용을 알 수 없는 부분적인 수리공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현재의 건물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수리가 이뤄졌을 뿐 1657년의 중창 때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판단됨. 특히 서까래와 같은 일부 부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조부재는 1657년 중창 이래 변함 없이 대체적인 원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 대웅전의 보존 상태는 극히 양호한 편이며, 소규모 사찰의 大雄殿으로서는 화려한 수법이 구사된 뛰어난 건축임. 다만 정면과 배면의 공포 구성이 다르고, 좌, 우측면의 보간포가 짜여지지 않는 등 다소 완결성이 떨어지는 느낌도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조선후기 사찰건축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며, 특히 임진왜란 때 크게 피해를 보았던 이 지역 사정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임.
- 특기할 만한 것이 順治 十三年 記 墨書銘인데, 이는 부산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조영기문으로서 여기에는 당시 大雄殿 중창공사에 관여했던 사찰 승려는 물론이고 시주를 했던 인물들이 망라되어 있음.
- 임진왜란으로 크게 피해를 보았던 이 지역에서 이처럼 장려한 佛殿 건물을 짓게 된 계기는 물론이고, 다방면의 시주자 등을 통해서 당시 이 지역 향토사 연구에 더없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이상에서와 같이 금번의 墨書銘 발견으로 이 건물의 건립연대가 확실히 규명된 만큼 그 문화재적 가치는 확연히 밝혀졌다고 생각됨. 즉, 부산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으로서, 특히 임란 직후에 건립된 희소적인 가치를 감안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금번의 조사는 宗道里 받침장혀를 완전히 드러내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이뤄짐으로써 극히 일부지만 판독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었던 만큼 향후 해체 수리를 통하여 온전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지정가치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 [붙임] 국가지정 신청문화재 조사검토보고서

## 1. 지정신청 현황

- 지정현황 :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37호
- 명 칭 : 장안사 대웅전 (長安寺 大雄殿)
- 소 유 자 : 장안사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598번지 외 2
- 수 량 : 1동
- 규 격 : 정면 3칸 × 측면 3칸
- 재 질 : 목조 와가
- 형 식 : 팔작지붕
- 조성연대
  - 신라 문무왕 13년(673년) 원효대사가 척관암과 함께 창건
  - 신라 애장왕(809년) 장안사라 고침
  - 인조 8년(1631년) 임진왜란때 소실된 것을 의월대사가 중창, 7년 뒤 태의대사가 중건함
  - 효종 8년(1657년) 원정, 학능, 충묵 스님이 대웅전을 중건
  - 영조 20년(1744년) 서까래 등 부분적인 수리를 함
  - 1948년 각현스님이 대웅전과 각 건물을 중수함

## 2. 조사자 의견

### 가. 문화재위원 ○○○

#### 1) 연 혁

기장군 장안읍 불광산 기슭에 자리한 장안사는 신라 문무왕 13년(673년)에 원효대사가 이 척관암과 함께 창건하여 쌍계사라 하였고, 이후 애장왕(809년)이 이 곳을 다녀간 후 장안사라 부르게 되었다.

임진왜란 때 병화로 모두 소실되었다가 인조 8년(1631년) 의월대사가 중창하였고, 1638년 태의대사가 중건하였다고 한다.

長安寺大雄殿記에 의하면 효종 5년(1654년) 원정, 학능, 충묵 스님이 대웅전을 중건하였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2009년 6월 천장 일부를 해체하고 조사한 결과 ‘淸國 順治 十三年 丁酉’라 기록된 묵서명을 통해 효종 8년(1657년)에 대웅전이 중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장현이 울산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복현되는 시점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임진왜란 때 소실된 대웅전을 복구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영조 20년(1744년)에 일부 서까래를 수리한 소규모의 공사의 기록과 1947년, 1951년명 수리 목서명도 함께 확인하였다.

## 2) 현 황

장안사 대웅전은 정면 3칸(11.65m), 측면 3칸(7.63m)에 구배가 큰 겹처마팔작지붕을 올린 목조와가이다. 자연초석 위에 민흘림 원기둥을 세웠다.

정면 어칸에는 4분합 띠살문을, 좌우 협칸에는 3분합 띠살문을 달았고, 측면 출입문과 배면 출입문에는 교살로 된 여닫이 띠살문을 달았다. 문선에서는 체비추리맞춤이나 연귀맞춤과 같은 고식이 남아 있다.

공포는 다포계 형식의 내외3출목포작이다. 정면에는 각 주칸마다 각기 1구의 주간포, 배면에는 어칸에만 1구의 주간포를 배치하였다. 반면에 측면에는 주간포를 두지 않고 있어 각 면의 공포구성이 차이 있게 구성되어 있다. 초제공과 2제공은 쇠서 형태를 양서로 만들었고, 삼제공도 두 갈래로 부리가 빠져 나와 있는 특이한 형상이다. 내부의 공포는 보아지형태이며, 주심첨차는 첨차 단부를 수직으로 절단하고 그 아래를 교두형으로 하였다. 3개의 출목첨차는 사절하고 그 아래를 S자 형태로 조각했다. 배면의 주간포는 살미의 끝이 전면이 양서형인데 비해 교두형으로 만들었다. 공포의 형태도 정면과 좌우 측면, 배면에서 시기적 차이와 수법의 차이가 보인다.

가구는 5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 고주는 후퇴하여 전면 공간을 넓게 마련하고 있다.

천장은 종보 상단에서 우물천장을 설치하고, 평주에서 고주까지의 높이에는 외곽으로 빗천장을 마련하였다.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짜서 깔았다.

## 3) 조사자 의견

장안사 대웅전은 상태가 양호하며 소규모의 사찰 대웅전으로서는 화려한 수법이 구사된 건축물이다. 다만 정면과 배면의 공포 구성이 다르고, 좌, 우측에는 주간포가 짜여지지 않는 등 완결성이 떨어지는 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조선 후기 임진왜란으로 인해 크게 피해를 입은 지역 사정을 감안하면 개, 보수 당시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했을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는 점이다.

長安寺大雄殿記에서 보였던 기록을 천장 속 목서명을 통해 확인하였다. 효종 8년(1657년)에 중수된 목서명에는 인근의 범어사, 통도사의 목서명과 달리 당시 중창 공사에 관여했던 사찰 승려는 물론이고, 시주를 했던 인물까지 망라되어 있어 건축사와 향토사를 연구하는데 더없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조 32



년(1599년) 기장현이 혁파되어 동래와 울산에 나뉘어 편입되었다가 효종 4년(1653년)에 당시 기장 현감 강유후의 진소로 54년 만에 복현되었던 시점과 대웅전의 조영시점이 같아진다.

이 기록에 따르면 1657년에 중창이 된 후, 두 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분적인 수리일 뿐 대부분의 구조부재는 1657년 이래 원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구조부재 등 주요 골격이 1658년 중창 이래 변함이 없다는 것은 부재의 재질과 형상등이 옛 모습 그대로일 뿐 아니라 같은 시기 인근 사찰 건물의 용척과 동일한 점에서도 시기적 연관성이 입증된다. 범어사 대웅전(1658년)과 이로부터 40년 뒤에 세워진 범어사 일주문(1694년)과 동일한 평균 1.04곡척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건물의 확실한 건립연대로 그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부산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으로서 임란 이후에 건립된 희소적인 가치를 감안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번 조사는 종도리 하부장혀를 완전히 드러내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진 내용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향후 해체 수리를 통해 온전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나. 문화재전문위원 ○○○

### 1) 연 혁

장안사는 불광산(659m) 자락에 있는 고찰로 범어사(梵魚寺)의 말사이다. 673년(신라 문무왕 13) 원효대사가 창건하여 쌍계사라 부르다가 애장왕(809)이 이곳을 다녀간 809년부터 장안사로 고쳐 불렀다. 1592년(선조 25)에 일어난 임진왜란으로 모든 전각이 소실된 후 1631년(인조 8)에 의월대사, 1638년(인조 16)에 태의대사가 각각 중창하였다. 1654년(효종 5)에 승(僧) 원정 · 학능 · 충묵이 대웅전을 중건하고, 1948년에 승(僧) 각현이 대웅전 및 부속 건물을 수리했다. 그 후 1987년에 종각을 짓고 요사채를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金邦翰(1635~1698)<sup>1)</sup>이 쓴 장안사대웅전기(長安寺大雄殿記)에 의하면 효종 5년(1654)에 승(僧) 元正이 순치 갑오년(효종 5)에 대웅전 복구의 원(願)을 세워 정유년(효종 8, 1657)에 중건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6월 천장 반자의 일부를 해체하고 조사

1) 조선 중기의 유학자로, 자는 공점(公漸)이고 호는 오정(鰲亭). 본관은 慶州이고 출신지는 경상남도 蔚山이다. 증조부는 김취(金鷲), 조부는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兵曹判書에 追贈된 金潤龍이고, 아버지는 金慶裕이다. 그는 1678년(숙종 4) 戊午 增廣試 生員 3등 62위로 합격하였다. 그는 소과에 합격하였으나 대과공부는 하지 않고 향리에 은거한 채 학문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썼다. 그는 육경과 제자백가에 두루 통달하였으나 특히 《周易》에 밝았다. 그리하여 《周易》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7년간 圓寂山 滴水庵에 들어가 연구하여 《周易集解》를 완성하였지만 당시에는 간행하지 못하고, 1918년 후손 金時駿이 간행하였다. 저서로 《鰲亭先生文集》이 전한다.

한 결과 <順治十三年記宗道理墨書銘(효종 8년,1657)> 1건 등 모두 4건의 묵서명(墨書(銘)이 발견되었다.

**대웅전 천장 반자 속에서 발견된 묵서명**

- ①順治十三年記宗道理墨書銘<sup>2)</sup>  
 清國順治十三年機張北面佛光山長安寺法堂大雄殿丁酉二月初四日山役 五月十二日立柱 六月初七日上樑記文(이하 생략)  
 緣化秩 指示 杜軒比丘, 都邊手信行比丘, 左邊手知幻比丘, 右邊手明鑑比丘 副邊手○性比丘, 德日比丘, 德明比丘, 聖昶比丘, 雪玄比丘, ○○比丘, 尙式比丘, 僅宗比丘, 德○比丘, 國玄比丘, 日澄比丘, 覺文比丘, 大玄比丘, 呂默比丘
- ②乾隆八年記 종도리 받침장여 墨書銘<sup>3)</sup>  
 乾隆八年歲在甲子四月初八日 椽重修同苦錄 大木 比丘喆弘 金貴碩, 金世興, 高尚丁時僧統 嘉善應信 時和尚嘉善平學 前僧統通政建學...(이하 생략)
- ③佛紀二千九百七十四年三月日記緣化秩<sup>4)</sup>  
 佛紀二千九百七十四年三月日 居士河元竣 朴善導化 鄭慶浩 宋有情化 裴洪植, 金吉祥化 尹德鳳...(이하 생략)
- ④佛紀二九七八年記 緣化秩<sup>5)</sup>  
 緣化秩 佛紀二九七八年 比丘 金霑山 黃覺玄 金香谷 趙雪色 沙彌金錫天 安炳浩 負木 金龍雲... (이하 생략)

위 묵서명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金邦翰(1635~1698)<sup>6)</sup>의 長安寺大雄殿記에 근거하여 대웅전이 대략 1654년(효종 5)에 건립된 것으로 보았다. 長安寺大雄殿記에 “順治甲午 有元正者 欲新前功 袖一券而行乞 萬程經營 丁酉斷手 戊午千礎鰲浮萬楹彙飛 巋然法堂 不日古成 釘而裝之者 禪學其人也 瓦而盖之者 學能其師也 腹而彩之者 沖默是也 造成佛像者 印岑是也” 라 하여 1654년(順治 甲午)에 元正이 주도하여 공사를 시작하여, 정유년(효종 7, 1657)에 공사를 시작해서 무술년(효종 8년, 1658)에 완공했으며 개와(蓋瓦) 및 단청은 각각 學能, 沖默, 印岑이 맡았음을 알 수 있다.

2)종도리 하부에 너비 12cm, 길이600cm로 편평하게 다듬은 면에 墨書한 상량문. 총1184자 중 45자는 판독이 불가능함  
 3) 종도리 받침장여 앞면에 큰 글씨로 적은 것이다. 상량문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으며 모두 112자에 불과하다.  
 4)20×30cm크기의 목판에 쓴 묵서로 건물 우측 종도리 받침장여의 측면에 못으로 고정했다. 불기 2974년은 서기 1947년에 해당한다. 모두 81자가 적혀 있는데, 모두 시주자 이름이다.  
 5)20×40cm크기의 목판에 쓴 묵서로 佛紀二千九百七十四年三月日記緣化秩 묵서명 옆에 나란히 붙어 있다. 불기 2978년은 서기 1951년에 해당한다. 모두 98자가 적혀 있는데, 序文이 없어서 공사 내용을 알 수 없다.  
 6)조선 중기의 유학자로, 자는 공점(公漸)이고 호는 오정(鰲亭). 본관은 慶州이고 출신지는 경상남도 蔚山이다. 증조부는 김취(金鷲), 조부는 임진왜란 때 창의하여 兵曹判書에 追贈된 金潤龍이고, 아버지는 金慶裕이다. 그는 1678년(숙종 4) 戊午 增廣試 生員 3등 62위로 합격하였다. 그는 소과에 합격하였으나 대과공부는 하지 않고 향리에 은거한 채 학문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썼다. 그는 육경과 제자백가에 두루 통달하였으나 특히 《周易》에 밝았다. 그리하여 《周易》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7년간 圓寂山滴水庵에 들어가 연구하여 《周易集解》를 완성하였지만 당시에는 간행하지 못하고, 1918년 후손 金時駿이 간행하였다. 저서로 《鰲亭先生文集》이 전한다.

이 기록은 최근에 발견된 <順治十三年記宗道理墨書銘>에서 정유년(효종 7년, 순치 14)에 상량했다는 기록과 일치한다. 다만 위 묵서명에서 순치 13년을 정유년으로 표기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金邦翰의 <長安寺大雄殿記>는 <順治十三年記宗道理墨書銘>의 내용과 일치하며, 그가 거론한 공사관계자들은 묵서명이나 불상 복장기(慶尙左道蔚山南面佛光山長安寺佛像施主秩目)에서도 확인된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장안사 대웅전은 임란때 소실된 후 1658년(순치 14, 효종 8)에 중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영조 20년(1744)에 서까래 등 부분적인 수리를 했으며, 1948년에 각현스님이 대웅전과 각 건물을 중수하였다. 이밖에 1951년도 대웅전 수리가 있었으나 공사범위와 내용은 알 수 없다. 영조 20년(1744)에는 서까래를 보수하는 중수가 있었으나 참여한 工匠의 수가 4명에 불과해서 대규모 보수공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공사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공포의 형식편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때 연목교체를 비롯 공포재 교체 등의 옥개부 해체수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웅전의 부분적인 수리는 <乾隆八年記 중도리 받침장여 墨書銘>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1948년의 보수는 <佛紀二千九百七十四年三月日記緣化秩>에 나타나 있으나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1951년의 대웅전 보수는 <佛紀二九七八年記 緣化秩>을 통해 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金邦翰의 <長安寺大雄殿記>와 천장 우물반자 속에서 발견된 묵서명을 종합해 볼때 장안사 대웅전은 1657년(효종 7)에 공사를 시작해서 1658년(효종 8)에 완공한 17세기 중엽의 다포계 주불전으로 그후 1744년과 1948년, 1951년에 부분적으로 수리하여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947년과 1951년에 대대적인 공사가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 즉 1947년 묵서명에 8명의 민간인 시주자 만이 기록되고, 1951년의 묵서명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때 작성된 만큼 공포를 교체할 정도의 큰 공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공포형식은 건물의 연혁과 편년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이 점에서 장안사 대웅전의 공포는 매우 독특한 것이다. 안초공이 사용되고, 살미는 범어사 대웅전의 양서형보다 더욱 細長하고 曲率이 커서 이보다 후대 형식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선후기 다포계 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연봉형이나 연화형살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선 말기에 變改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공포를 제외한 주요 구조재는 1657년 중창 모습이고, 문선 등에 고식의 제비추리맞춤이나 연귀맞춤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건축사적으로 가치있는 건물로 판단된다.

## 2) 건물 현황

### 2.1 평면

장안사 대웅전은 정면 3칸(11.65m), 측면 3칸(7.63m)에 구배가 큰 겹처마 팔작지

붕을 올린 목조와가이다.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정면과 배면의 주간치수는 어칸이 4,100mm로 약간 더 크고, 좌우 협칸은 각각 3,750mm 및 3,800mm으로 거의 같다. 평면 설정은 측면인 경우 용척 315mm를 사용하여 8척(尺)의 등 간격으로 주간(柱間)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정면 주간은 양 협칸이 12자, 어칸이 13자이다. 공포 간격은 주간이 넓은 정면 어칸은 약 2050mm(6자 반)이나 양 협칸의 경우 이보다 좁은 1,890mm(6자)이다. 좌우 양 측면 주간은 제1, 2, 3열이 각각 2,550mm, 2,550mm 및 2,530mm로 동일하며 이것으로 보아 조영시 영조척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의 주간과 주고 등에 사용된 영조척은 당시 이 지역에서 사용되던 영조척 평균치인 1.04곡척(曲尺) 범위로 나타남. 이는 범어사 대웅전(1658년, 종도리 하단 목서명 기준)이나 범어사 일주문(1694년)과 같은 비슷한 시기의 건물들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 2.2 입면

### 가) 기둥과 창호

외진에 높이가 비슷한 평주(平柱) 12주를 세웠으며, 기둥 굵기는 정면 평주 4개, 좌측면 평주 3개 및 우측 제3열 우주(隅柱)가 같고 나머지 평주 4개는 이보다 약간 가는 편이다. 외진 평주에는 민흘림 기법으로 치목한 원주(圓柱)를 사용했으며, 기둥 높이는 약 4.2m로 주경(柱徑)의 7배 정도이다. 창방과 평방을 겹쳐 놓고 그 위에 내외 3출목의 다포식 공포를 짜고 그 위에 겹쳐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지붕이 구배가 큰 팔작집이므로 건물의 수직성이 더욱 강조되어 고준(高峻)한 느낌을 준다. 대웅전 불단 좌우 고주의 주경은 평주에 비해 가는 편이다. 정면 어칸에는 사분합 띠살문을, 좌우 협칸에는 삼분합 띠살문을 각각 달았고, 양 측면 전열(前列)과 배면 어칸에도 교살로 된 외여단이 띠살문을 달았다. 문얼굴과 문선의 결구에 체비초리맞춤과 연귀맞춤이 사용되었으나 많이 개변되어 있다.

대웅전으로 출입하기 위한 문은 정면 전간(全間)을 비롯 양 측면, 배면 어칸에 시설되어 있다. 정면에는 들어열개 방식의 사분합문(어칸)과 삼분합문(양 퇴칸)이, 양 측면과 배면에는 외여단이 띠살창이 달려 있다. 정면의 문짝은 하부에 2단으로 궁창널을 끼우고 그 위에 다시 정자살 또는 교살을 넣은 것으로 창호의 구조와 살 짜임 등으로 보아 17세기 중엽의 중건시나 1744년 중수시 만든 창호로 볼 수 없으며, 근대기에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 나) 기단과 초석

기단은 막돌 허튼층쌓기 수법으로 축조하고 그 위에 시멘트 몰탈을 덧바르는 수법으로 마감했다. 이는 근대이후 수리하면서 개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면 기단은 상하 2단으로 축조한 것으로, 상층기단을 하층 기단에서 뒤로 물려 조성하고 앞쪽에

화단을 조성해 놓았다. 정면 기단의 중앙부에는 어칸의 폭에 맞춘 8단의 석계(石階)가 시설되어 있으며, 석계의 노출면은 시멘트 몰탈을 바르고 마감했다.

대웅전은 정면에 위치하는 중정 바닥보다 약 2m 정도 더 높으며, 기단 위에는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전통적인 덩빙주초 방식으로 기둥을 세웠다.

### 2.3 상부가구와 구조

상부가구는 5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불벽을 형성하는 불단 좌우의 고주를 이주법(移柱法)으로 후퇴하여 불단 전면에 넓은 공간을 형성했다. 천장은 종보 상단에 우물반자를 시설하고, 평주와 고주 사이에는 빗천장을 마련하였다.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짜서 깔았다. 배면의 매주칸에는 창방과 하방사이에 벽선을 대고 토벽을 쳤으며, 벽선의 모서리는 연귀맞춤(좌우 퇴칸) 또는 장부맞춤(어칸)으로 되어 있다. 배면 벽의 중방은 모두 신재로 교체되어 있다. 벽선과 문선의 맞춤법 차이와 신재로 교체된 중방재로 보아 배면 벽은 근대이후 부분적으로 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 측면 외벽(2열과 3열)의 문열굴과 벽선 구성기법 등이 배면 벽과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시기에 수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 측면의 주간 중 출입문이 달려 있는 칸에는 문의 상인방과 문선을 제비초리 맞춤했고, 하인방과 문선은 장부맞춤으로 결구했다. 상인방과 문선의 크기가 다르고, 문열굴 보다 작은 띠살문을 달고 남는 공간을 목재로 막은 것으로 보아 문짝과 문열굴이 공히 개변된 것으로 보인다.

장안사 대웅전의 특징은 처마의 양곡에 있다. 처마의 정면 중앙부에서 좌우 추녀 쪽으로 가면서 처마가 위로 휘어 오르는 양곡의 정도가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러한 심한 처마 양곡에 맞추어 귀마루도 위로 많이 들어 있다. 지붕 귀마루의 전각(轉角)과 처마 양곡의 정도는 뚜렷하며, 현존 목조건축 중에서도 같은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 같은 귀마루의 전각과 처마 양곡으로 큰 지붕면이 경쾌하게 인식된다. 이 같은 전각과 양곡은 길게 돌출된 추녀와 그 위에 놓인 사례 및 연목과 부연에 의해 결정된다. 장안사 대웅전의 특징적인 지붕형태와 세부기법은 전통건축의 지붕구조의 변천과 건축의 지역성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 2.4 공포

장안사 대웅전의 공포는 기본적으로 내외 2출목 5포작이다. 정면의 주상포와 간포, 그리고 좌우 측면의 주상포는 같은 양서형이나 배면 어칸의 간포에 사용된 살미첨차는 교두형이다. 정면 공포의 초제공과 2제공은 양서형이나 길이가 짧고 아래로 굽어져서는 곧바로 위로 치켜드는 형상이고, 삼제공의 끝을 두 갈래의 부리모양으로 처리한 것도 보기 드문 것이다. 정면과 측면 공포의 살미 내단은 상하가 분리된 교두형이 아니라 한 몸의 보아지형으로 처리했는데, 이는 주심포계 건축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심첨차는 첨차의 단부를 수직으로 절단하고 끝을 공굴린 교두형이나 3개의 출목첨차는 끝을 사절하고 그 아래를 S자형으로 초각한 것으로 조선후기 주심포계 건축의 첨차와 흡사하다. 배면 어칸의 간포는 살미 끝을 쇠서 모양로 처리하지 않고 주심첨차와 같은 교두형으로 처리했다. 포작에서 일관된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이는 오히려 조선후기 다포건축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공포재의 용척(用尺)을 검토한 결과 평균 1.02곡척(曲尺)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간(柱間)과 주고(柱高)에 사용된 용척인 1.04곡척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17세기 중엽에 증건된 후 수차의 수리를 거치면서 당초 공포가 지금과 같이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 즉 정면과 배면, 측면의 공포에서 나타나는 넓은 간포 간격과 형식상 통일되지 않은 살미형태 등은 후대 공포가 변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변개는 발굴된 목서명에 기록된 공사내용으로 보아 <乾隆八年記 종도리 받침장여 墨書銘> 이 작성된 영조 20년(1744) 중수공사 때로 추정된다.

#### 가) 전면과 측면의 주상포와 간포

기둥의 상부에는 안초공을 사용했는데, 안초공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창경궁 명정전(17세기초)에 비해 더 크고 장식적이다. 창방은 춤과 폭이 약 450×220mm로, 춤을 폭으로 나눈 비는 약 2.05이다. 타 건물에 보이는 춤/폭의 비는 운문사 대웅전이 2.33, 범어사 대웅전이 2.23, 통도사 대웅전이 2.0이며, 이것으로 보아 장안사 대웅전의 창방은 폭에 비해 춤이 상당히 크며, 이는 운문사와 통도사, 범어사로 이어지는 조선시대 남동해안 다포계 불전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평방의 폭과 춤은 약 430×240mm이며, 춤을 폭으로 나눈 비는 0.56으로 일반적인 다포계 건축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포계 건물의 포간 거리는 4척 전후이나 장안사 대웅전의 포간거리는 이보다 넓다. 이 경우 간포를 1구씩 추가하여 양 퇴칸의 공포 간격을 4척으로 축소 조정하고, 측면에도 간포를 1구씩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둥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첨과 중첨, 대첨을 사용하고, 첨차의 춤은 250mm(일반적인 다포집 180mm 내외)으로 타 건물보다 70mm 정도 높은 것으로 보아 건축 당시부터 공포간격을 의도적으로 설정했음을 알 수 있다.

주두의 크기는 폭과 춤이 560×240mm로, 조선후기 주심포계 불전의 주두크기에 가깝다. 주두의 폭은 560mm로 넓은 편인데, 이는 공간포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넓어 이를 시각적으로 보정할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소로의 경우 폭 190mm, 춤 130mm으로 일반적인 다포계 건물에 비해 춤이 다소 크다. 이는 첨차의 춤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안사 대웅전에는 주심첨차와 출목첨차가 사용되었으며, 마구리는 공히 교두형이다. 주심에 사용된 소첨, 중첨, 대첨의 크기는 길이 780mm · 1,180mm · 1,440mm

이며, 폭 120mm, 춤 250mm이다. 이처럼 첨차를 소첨, 중첨, 대첨의 3단으로 구성한 예는 주로 충북 보은의 법주사를 중심으로 중부 내륙지방에서 많이 나타나며, 이밖에 경남의 양산 통도사 응진전 · 밀양 영남루내 천진궁 · 창원의 성주사 대웅전에서도 사용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대첨과 소첨에 삽입된 중첨은 18세기를 전후하여 동남해안 지역에서도 채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포계 건축에 사용되는 첨차의 크기는 폭 120mm, 춤 160~200mm 정도가 일반적이거나 장안사 대웅전의 첨차는 폭 120mm, 춤 340mm로 폭에 비해 춤이 매우 크다. 대개 주심포계 건축의 첨차 춤이 다포계보다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주심포 건축의 영향도 고려해 볼만 하다. 교두형의 첨차 마구리는 직절된 부분이 150mm, 둥글게 굴린 부분이 100mm로 직절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커서 둔탁한 느낌을 준다.

출목첨차는 소첨과 대첨으로만 구성되며, 첨차의 길이는 주상포의 소첨, 중첨과 같다. 출목첨차의 마구리는 소첨과 대첨 공히 사절(斜切)된 마구리에 연화두식의 변화된 모습을 초각했다. 이 같은 첨차 모양은 창방 뿔목과 내부의 보아지, 5량 화반 동자주에도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초각형 첨차는 주로 연해(沿海) 지역의 다포계 건축에서 볼 수 있다. 대개 출목 소첨만 초각하는데 비해 장안사 대웅전의 경우 출목 소첨은 물론 출목 대첨까지도 초각했다. 유사한 사례로 전북 김제 금산사 대장전과 부산 범어사 불이문이 있다.

장안사 대웅전 공포는 내외 2출목이며, 외부로 4제공이 일체를 이루고 있다. 출목의 간격은 내외 공히 340mm이며, 제공의 형태는 초제공과 이제공은 짧은 양서형이고, 삼제공은 연화(蓮花) 수서형이다. 사제공(사익공)의 경우 측면 주상포는 봉두형(鳳頭形)이나 정면(正面)은 운공형으로 되어 있다. 대개 정면성을 고려하여 정면의 사제공 끝에 봉두를 조각하여 장식하는 경향과는 차이를 보인다. 제공의 내외부는 초각으로 일체화가 되어있으며, 이는 교두형 첨차를 사용하여 상하가 구분된 조선중기의 공포보다 후기 형식에 속한다.

## 나) 배면의 주상포와 간포

배면의 공포의 형식과 구성은 정면 공포와 다르다. 배면 주심첨차의 구성은 정면과 같이 소첨, 중첨, 대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출목첨차의 경우 소첨과 대첨이 공히 교두형으로 마감되어 있다. 살미의 형태는 모두 교두형으로 보통 조선중기 다포계 건축에서 일반적으로 삼제공 끝을 삼분두로 처리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또한 교두형 삼제공 끝에 소로를 놓아 사제공을 받는 형식은 상당히 특징적인 공포 구성방식이다. 배면의 양 퇴칸에는 간포 대신 화반(花盤)을 사용했는데, 주심첨차의 키가 커서 화반의 크기도 상당히 높다. 삼제공의 위치에서 제공 형식으로 아래를 초각한 부재를 사용하여 간포 대신 내외 출목장여를 지지하도록 했다.

## 다) 귀포

장안사 대웅전에서 가장 특징적인 공포 구성은 귀포에 나타난다. 귀한대의 구성은 모두 양서형으로, 초기 다포건축의 유상이 있는 형식에 연해지역 다포계 건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용두(龍頭, 삼제공 위)를 올려 장식했다. 좌우대의 출목첨차는 모두 약한 수서형으로 이는 양서형으로 구성하는 일반적인 형식과는 다른 것이다. 또한 교두형 좌우대의 첨차에 당초문을 초각한 것은 주상포나 간포가 일반적인 다포계 첨차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주상포와 같이 첨차에 초각할 경우 밖으로 드러나는 교두형의 내출목 첨차 마구리를 효과적으로 감출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안사 대웅전 공포의 큰 특징은 귀포 내출목 첨차의 외부 돌출이다. 다포계 건물에서 귀포의 내출목 첨차는 소첨인 경우 도매첨으로, 대첨인 경우 병첨의 형식으로 건물 내부에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장안사 대웅전에서는 내부의 첨차가 밖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취했다. 그 결과 우주의 주상포에서 중첨과 대첨의 길이가 내출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길어졌으며, 귀포의 좌우대 첨차 길이도 더 길어졌으며, 내출목의 첨차 마구리를 시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당초문을 초각했다. 일반적으로 귀포에서는 귀한대가 내외(內外) 첨차를 일체화하는 역할을 하나 장안사 대웅전에서는 내부의 첨차가 주심(柱心)을 지나 밖으로 돌출하여 귀포의 일체화를 구조적으로 보완하고 첨차의 초각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달성했다.

## 라) 공포의 특징

전술한바와 같이 장안사 대웅전은 문헌기록으로 볼 때 1658년(순치 14, 효종 8)에 중건된 건물이다. 그러나 배면의 공포의 형식과 구성이 정면과 측면의 공포와 다르다. 무엇보다 공포 살미와 안초공 등의 세부 형태가 1658년 중건시의 형식보다 후대의 것으로 나타나 그 후 수리시 공포형식이 지금과 같이 개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기록과 부재의 형태를 살펴볼 때 1744년에 지붕을 해체하여 연목 등을 교체하면서 공포도 교체한 것으로 사료된다. 장안사 대웅전의 살미는 범어사 대웅전(1658)의 양서형 살미보다 더욱 세장하고 곡율이 커서 이보다 후대형식이 분명해 보인다. 다만 봉두형은 사용되었으나 화려한 연봉형이나 연화형 살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선말기까지 내려오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살미의 형상만 두고 서울 문묘 존경각(1772년)의 익공과 약간 비슷한 점이 있고, 마구리 양 단부가 사절된 출목첨차의 형태는 수덕사 대웅전과 같은 고려이후 주심포계와 익공계 건물에서 사용되던 것이다. 따라서 장안사 대웅전의 공포는 개변(改變) 이전까지는 범어사 대웅전과 같은 고졸한 양서형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후 수리할 때 당시 유행하던 여타 공포법식 및 어려운 사원(寺院) 경제와 공역 여건 등에 맞추어 측면과 배면을 소략하게 처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안사 대웅전의 공포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첨차의 폭에 비해 춤이 매우 높으며, 주심첨차는 소첨, 중첨, 대첨으로 구성되어 공포대의 높이가 일반적인 다포건축에 비해 높다. 출목첨차가 모두 초각형이고, 인근 지역에서 보기 드문 안초공이 사용되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귀포에서 내부첨차가 외부로 돌출되어 있고, 귀포의 좌우대 첨차가 모두 수서형으로 구성된 것도 큰 특징이다. 정면 공포의 포간 거리가 넓고, 측면의 주간포가 생략되었으며, 배면 양퇴칸의 간포를 생략한 것은 조선중기 이후 불교사원의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포계의 장안사 대웅전은 공포를 구성하는 세부요소의 규격과 형태, 치목수법 등에서 조선 중기이후 주심포계 건축의 영향을 받은 건물이며, 남동해안 다포계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수작이다.

### 3) 조사자 의견

대웅전 천장반자 속에서 발견된 4건의 목서명(<順治十三年記宗道理墨書銘>,<乾隆八年記 종도리 받침장여 墨書銘>, <佛紀二千九百七十四年三月日記緣化秩>, <佛紀二九七八年記 緣化秩>)은 이 건물의 건축연대와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金邦翰의 長安寺大雄殿記와 함께 이 건물이 17세기 중엽(1657년)에 건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영조 20년(1744)에 지붕부분(연목과 공포대)을 수리했으며, 1947년과 1951년에도 부분적인 수리가 있었다. 따라서 장안사 대웅전의 주요 구조부는 대체로 1657년에 중건된 후 1744년에 옥개부를 수리한 이후의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안사 대웅전의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지방 소규모 사찰의 주불전으로서 17세기 중엽의 건축기법이 구사된 목조건물이다. 그러나 정면과 배면의 공포 구성이 다르고, 좌우 측면에 간포를 두지 않는 등 공포에 있어서 건축의 완결성이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다. 이는 조선후기 지방 사찰건축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특히 임란 때 크게 피해를 보았던 지역 사정과 피폐했던 사원경제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연혁을 보여주듯 장안사 대웅전의 배면 공포형식과 구성은 정면, 측면과 다르며, 공포살미와 안초공 등은 1658년의 중건시보다 후대 형식이 사용되었다. 이는 1744년에 연목 등을 수리하면서 공포재도 함께 수리 및 교체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장안사 대웅전의 공포 특징은 첨차의 폭에 비해 춤이 매우 높으며, 주심첨차가 소첨, 중첨, 대첨으로 구성되어 공포대의 높이가 일반적인 다포건축에 비해 높다. 주심첨차가 교두형인데 반해 출목첨차를 의장적인 초각형으로 처리한 것도 특징이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보기 드문 안초공이 사용되었다. 귀포에서 내부첨차가 외부로 돌출되어 있고, 귀포의 좌우대 첨차가 모두 수서형으로 구성된 것도 큰 특징이다. 정면 공포의 포간 거리가 넓고, 측면의 주간포가 생략되었으며, 배면 양퇴칸의 간포를 생략한

것은 조선중기 이후 불교 사원의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포계의 장안사 대웅전은 공포를 구성하는 세부요소의 규격과 형태, 치목수법 등에서 조선 중기 이후 주심포계 건축의 영향을 받은 건물이며, 남동해안 다포계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수작이다.

장안사 대웅전의 특징은 처마의 양곡에서도 나타난다. 지붕 귀마루의 전각(轉角)과 처마 양곡의 정도는 뚜렷하며, 현존 목조건축 중에서도 같은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 같은 귀마루의 전각과 처마 양곡으로 큰 지붕면이 경쾌하게 인식된다. 장안사 대웅전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지붕형태는 전통건축의 지붕구조와 입면구성 및 건축의 지역성 연구에 좋은 자료이다.

1657년 중건시 건축기록인 <順治十三年記宗道理墨書銘>은 부산 지역에서 발견된 조영기문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 문서명에는 당시 대웅전 중건공사에 관여했던 사찰 승려는 물론이고 시주를 했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조선중기 사찰건축의 조영과정과 건축생산 제도 이해에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임진왜란으로 크게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이처럼 장려한 불전(佛殿)건물을 짓게 된 계기는 물론 다방면의 시주자들을 기록하고 있어 지역 불교건축사와 향토사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장안사 대웅전은 金邦翰의 長安寺大雄殿記와 문서명의 발견으로 건물의 중건 및 중수연대가 확실히 규명되었고, 다포식 건물이면서 주심포계와 익공계의 세부기법이 절충된 특징적인 공포형식, 양곡과 전각이 강한 특징적인 지붕을 가진 건물로 건축사적 ·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 특성을 고려할 때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 문화재전문위원 ○○○

### 1) 연 혁

불광산 기슭에 자리한 장안사는 범어사(梵魚寺)의 말사로 신라 문무왕 13년(673) 원효대사가 창건하여 쌍계사라 부르다가 애장왕이 이곳을 다녀간 809년부터 장안사로 고쳐 불렀다. 임진왜란으로 모든 전각이 소실된 후 인조 8년(1631)에 의월대사, 인조 16년(1638)에 태의대사가 각각 중창하였다. 효종 5년(1654)에 승(僧) 원정 · 학능 · 충묵이 대웅전을 중건하고, 1948년에 승(僧) 각현이 대웅전 및 부속 건물을 수리했다. 그 후 1987년에 종각을 짓고 요사채를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방한(1635~1698)이 쓴 장안사대웅전기(長安寺大雄殿記)에 의하면 효종 5년(1654)에 승(僧) 元正이 순치 갑오년(효종 5)에 대웅전 복구의 원(願)을 세워 정유년(효종 8, 1657)에 중건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6월 천장 반자의 일부를 해체하고 조사한 결과 <順治十三年記宗道理墨書銘(효종 8년,1657)> 1건 등 모두 4건의 문서명(墨書

(銘)이 발견되었다. (목서명 생략)

위 목서명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김방한(1635~1698)의 장안사대웅전기에 근거하여 대웅전이 대략 1654년(효종 5)에 건립된 것으로 보았다. 長安寺大雄殿記에 1654년(順治 甲午)에 元正이 주도하여 공사를 시작하여, 정유년(효종 7, 1657)에 공사를 시작해서 무술년(효종 8년, 1658)에 완공했으며 개와(蓋瓦) 및 단청은 각각 學能, 沖默, 印峯이 맡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은 최근에 발견된 <順治十三年記宗道理墨書銘>에서 정유년(효종 7년, 순치 14)에 상량했다는 기록과 일치한다. 다만 위 목서명에서 순치 13년을 정유년으로 표기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김방한의 <長安寺大雄殿記>는 <順治十三年記宗道理墨書銘>의 내용과 일치하며, 그가 거론한 공사관계자들은 목서명이나 불상 복장기(慶尙左道蔚山南面佛光山長安寺佛像施主秩目)에서도 확인된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장안사 대웅전은 임란때 소실된 후 1658년(순치 14, 효종 8)에 중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영조 20년(1744)에 서까래 등 부분적인 수리를 했으며, 1948년에 각현스님이 대웅전과 각 건물을 중수하였다. 이밖에 1951년도 대웅전 수리가 있었으나 공사범위와 내용은 알 수 없다. 영조 20년(1744)에는 서까래를 보수하는 중수가 있었으나 참여한 工匠의 수가 4명에 불과해서 대규모 보수공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공사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공포의 형식편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때 연목교체를 비롯 공포재 교체 등의 옥개부 해체수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웅전의 부분적인 수리는 <乾隆八年記 종도리 받침장여 墨書銘>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1948년의 보수는 <佛紀二千九百七十四年三月日記緣化秩>에 나타나 있으나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1951년의 대웅전 보수는 <佛紀二九七八年記 緣化秩>을 통해 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2) 건물 현황

장안사 대웅전의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정면과 배면의 주간치수는 어칸이 4,1m로 약간 더 크고, 좌우 협칸은 각각 3,75m 및 3,8m로 거의 같다. 평면 설정은 정면 주간은 양 협칸이 12자, 어칸이 13자, 측면인 경우 용척 3.15m를 사용하여 8척(尺)의 등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이 건물의 주간과 주고 등에 사용된 영조척은 당시 이 지역에서 사용되던 영조척 평균치인 1.04곡척(曲尺) 범위로 나타남. 이는 범어사 대웅전(1658년, 종도리 하단 목서명 기준)이나 범어사 일주문(1694년)과 같은 비슷한 시기의 건물들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기둥은 외진에 높이가 비슷한 평주(平柱) 12주를 세웠고, 외진 평주에는 민흘림

기법으로 치목한 원주(圓柱)를 사용했으며, 기둥 높이는 약 4.2m로 주경(柱徑)의 7배 정도이다. 창방과 평방을 겹쳐 놓고 그 위에 내외 3출목의 다포식 공포를 짜고 그 위에 겹쳐마 팔작지붕을 올렸다.

지붕이 구배가 큰 팔작집이므로 건물의 수직성이 더욱 강조되어 고준(高峻)한 느낌을 준다. 대웅전 불단 좌우 고주의 주경은 평주에 비해 가는 편이다. 정면 어칸에는 사분합 띠살문을, 좌우 협칸에는 삼분합 띠살문을 각각 달았고, 양 측면 전열(前列)과 배면 어칸에도 교살로 된 외여단이 띠살문을 달았다. 문얼굴과 문선의 결구에 제비초리맞춤과 연귀맞춤이 사용되었으나 많이 개변되어 있다.

기단은 막돌 허튼층쌓기 수법으로 축조하고 그 위에 시멘트 몰탈을 덧바르는 수법으로 마감했는데, 근대이후 수리하면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대웅전은 정면에 위치하는 중정 바닥보다 약 2m 정도 더 높으며, 기단 위에는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전통적인 덩병주초 방식으로 기둥을 세웠다.

상부가구는 5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불벽을 형성하는 불단 좌우의 고주를 후퇴하여 불단 전면에 넓은 공간을 형성했다. 천장은 중보 상단에 우물반자를 시설하고, 평주와 고주 사이에는 빗천장을 마련하였다.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짜서 깔았다.

장안사 대웅전의 특징은 처마의 양곡에 있다. 처마의 정면 중앙부에서 좌우 추녀 쪽으로 가면서 처마가 위로 휘어 오르는 양곡의 정도가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러한 심한 처마 양곡에 맞추어 귀마루도 위로 많이 들어 있다. 지붕 귀마루의 전각(轉角)과 처마 양곡의 정도는 뚜렷하며, 현존 목조건축 중에서도 같은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 같은 귀마루의 전각과 처마 양곡으로 큰 지붕면이 경쾌하게 인식된다. 장안사 대웅전의 특징적인 지붕형태와 세부기법은 전통건축의 지붕구조의 변천과 건축의 지역성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공포는 기본적으로 내외 2출목 5포작이다. 정면의 주상포와 간포, 그리고 좌우 측면의 주상포는 같은 양서형이나 배면 어칸의 간포에 사용된 살미첨차는 교두형이다. 정면 공포의 초제공과 2제공은 양서형이나 길이가 짧고 아래로 굽어져서는 곧바로 위로 치켜드는 형상이고, 삼제공의 끝을 두 갈래의 부리모양으로 처리한 것도 보기 드문 것이다. 정면과 측면 공포의 살미 내단은 상하가 분리된 교두형이 아니라 한 몸의 보아지형으로 처리했는데, 이는 주심포계 건축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심첨차는 첨차의 단부를 수직으로 절단하고 끝을 공굴린 교두형이나 3개의 출목첨차는 끝을 사절하고 그 아래를 S자형으로 초각한 것으로 조선후기 주심포계 건축의 첨차와 흡사하다. 배면 어칸의 간포는 살미 끝을 쇠서 모양로 처리하지 않고 주심첨차와 같은 교두형으로 처리했다. 포작에서 일관된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이는 오히려 조선후기 다포건축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 3) 조사자 의견

장안사 대웅전은 다포식 건물이면서 주심포계와 익공계의 세부기법이 절충된 공포형식, 양곡과 전각이 강한 특징적인 지붕을 가진 건물이며, 공포를 제외한 주요 구조재는 1657년 중창 모습이고, 문선 등에 고식의 제비추리맞춤이나 연귀맞춤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건축사적으로 가치있는 건물로 판단된다. 또한, 김방한의 장안사대웅전기와 목서명의 발견으로 건물의 중건 및 중수연대가 확실히 규명된 부산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43.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기본설계 검토

### 가. 제안사항

경북 김천시 소재 보물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기본설계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물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기본설계를 검토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천시청
- (2) 대상문화재 : 김천 직지사 대웅전
  - 소재지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번지
  - 지정일 : 2008. 09. 03.
- (3) 신청내용 :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
  - 사업위치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92번지 일대
  - 사업목적
    - 불교문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불교문화관광 선도
    - 직지사 주변 난개발을 예방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문화·생태·체험형 복합휴양단지 조성
  - 부지면적 : 140,600m<sup>2</sup>
  - 사업내용 : 휴양문화시설, 한옥·초가체험마을, 공공편익시설 등
    - ※ 평화의 탑(11층 목탑, 높이 111m) 설치 : 황악산(해발1,111m) 상징

○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

(4) 주요 추진경과

- 2010. 03. 3대문화권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문화관광부)
- 2010. 11. 05 지방재정 투융자(중앙) 심사
- 2010. 12. 01 예비타당성(기획재정부·KDI) 조사완료
- 2011. 08. 30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경북도)
- 2011. 11. 0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김천시)

라. 향후 추진계획

- 2012. 5월 ~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
- 2012. 5월 ~ 10월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43개 기관)
- 2012. 11월 관광지 조성사업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 2012. 12월 기반 및 공원조성(토목, 조경) 공사 착공
- 2014. 1월 관광시설물(건물)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착공
- 2016. 12월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 완공

마. 의결사항

- 부결
  -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맞추어 재계획토록 함.
  - 최대한 주변 자연경관을 보존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2-05-044

### 44.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 보고

#### 가. 보고사항

문화재수리공사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정비와 관련하여 개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나. 보고사유

- 문화재수리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과 합리성 도모를 위하여 추진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항임.

#### 다. 사업현황

- (1) 사업비 : 31억원(도급자 : 명지대 산학협력단)
- (2) 사업기간 : '05.9~'11.11(총 68.5개월)
- (3) 사업내용 : 기존 품셈 「11공종 122항목」 을 「16공종 198항목」 으로 개정
- (4) 그간 추진현황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1~6차 연구용역 완료('05.9~'11.11)
  - 우선 개정품셈 관보고시('11. 4.11) 완료 및 시행 / 13개 공종 100개 항목 <2012년 개정 관련>
  - 표준품셈 개정(안) 전문가 자문회의 완료 : '12. 4. 3
  -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등 공청회 완료 : '12. 4. 6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관보고시(제17750호) 완료 및 시행 : '12. 4. 27



## 라. 주요내용

- 누락 공종 및 항목 신설 : 5공종 76항목 증가(당초 11공종 122항목)
- 인력품과 기계장비품으로 이원화 : 인력품 174항목, 기계장비품 24항목
  - 구체적인 품의 할증 기준 제시 및 명확한 수량산출기준 마련 등
    - 소단위공사, 높이, 실측조사 등에 대한 품 할증
    - 편수제도 확대(6직종) : 목공, 와공, 미장공, 석공, 드잡이공, 단청공
  - 목재 치목을 원목과 제재목으로 구분 적용
- \* 212년 개정 내용 : 석공사 등 13공종 98항목

## 마. 향후 계획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교육 실시 및 자료집 배포 : '12. 5~ 6월 중

##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접수 7명

## 45.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구조안전진단 결과 보고

### 가. 보고사항

경북 영주시 소재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 구조안전진단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합니다.

### 나. 보고사유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 대한 상태조사, 변위조사, 물성조사 등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번지
- (2)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11. 06. 22 ~ 2012 .04. 07
- (3) 보고내용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구조안전 진단 결과 보고
  - 무량수전 출목도리의 갈라짐, 주심포 변형, 대량부재의 갈라짐 및 보수용 앵커 사용 등 구조적 위해요인이 있으나 현재 사용상 구조안정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 변위 및 변형 발생에 대한 연속성 파악을 위해 장기 계측을 통한 정밀조사가 필요함.
  - 향후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보수정비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4) 주요 추진경과

- '10.10월 4귀 내림마루 기와이완, 북서쪽 추녀 부분에 누수 흔적 발견
- '10.10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및 자문회의(2회)
- '11.06.22~'12.04.07 구조안전진단 및 보수설계 실시
- '12.04.04 용역완료에 따른 자문회의

#### 라. 참고사항(보수실적)

- 1916년 해체·수리 공사
- 1999년 번와 보수
- 2002년~2003년 내부 바닥 보수, 지붕 일부 보수, 기단 보수

####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

## 46.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해체보수 계획 보고

### 가. 보고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국보 제21호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해체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합니다.

### 나. 보고사유

-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상층기단 갑석 균열과 관련하여 석탑 해체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국보 제21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1번지 불국사 경내
-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5월~2014.12월(3년8개월)
- (3) 보고내용 :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해체보수 계획(2012년 추진내용)

-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의 해체보수를 위한 연구 및 보수기반 조성, 경내에 가설덧집 설치 및 보존처리를 위한 작업공간을 마련하여 석탑 해체
  - 연구 및 보수기반 마련
    - 경주석조문화재보수정비사업단 및 자문위원회 구성
    - 해체 실행계획 수립
    - 연구인력 채용 및 관련자료 수집
  - 석탑해체용 가설덧집 설치
    - 규모 : 동-서15m, 남-북12m, 높이12m
    - 구조 : 철골구조, 호이스트 크레인(20ton 수동), 메탈패널, 아크릴창호
    - 기초 : 철근콘크리트 기초(역보형, 굴토 : 표토층 약20cm이내)

- 비고 : 관람용 데크, 보안용 CCTV 등
- 해체부재 보존처리 등 작업공간 마련
- 석탑 서측·남측 인접 회랑일부 보존처리 공간으로 전용
- 현장사무실(컨테이너) 1동 설치
- 석탑 해체
- 해체보고회, 언론보도 등 대국민홍보
- 부재 해체 시연, 상륜부 해체
- 조사 연구
- 풍화훼손지도 작성
- 해체부재 조사(3D 스캔, 실측, 기법조사) 및 기록 보존(사진, 영상 등)
- 석재 산지추정 연구

#### (4) 주요 추진경과

- 균열원인 연구용역('12.2완료)
  - 동북측 상층기단 내부 적심석이 풍화·내구성저하로 파괴되어 지지점 상실, 1층 탑신 우주에서 작용하는 집중하중(부재력)이 내구성이 저하된 상층기단 갑석의 단면내력을 초과하여 균열 발생
- 상시계측시스템('11.2~현재)
  - 경사계 및 이격계 운용 중 : 추가변위 발생 없음

#### 라. 향후 추진계획

연도	주요 내용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탑해체</li> <li>○ 풍화훼손지도 작성</li> <li>○ 해체부재 조사</li> </ul>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존처리(세척, 보수, 접합), 기단하부 조사</li> <li>○ 적심채움 방안·팔방금강좌·은장제작 연구, 석탑 복원설계</li> </ul>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탑복원, 복원결과 모니터링</li> <li>○ 학술심포지엄 개최 및 보고서 발간</li> </ul>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

## 47.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상시계측시스템 설치계획 보고

### 가. 보고사항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과학적인 구조모니터링을 위하여 상시계측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자 설치계획을 보고합니다.

### 나. 보고사유

-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에서 추진 중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구조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상시계측시스템 설치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 다. 상시계측시스템 설치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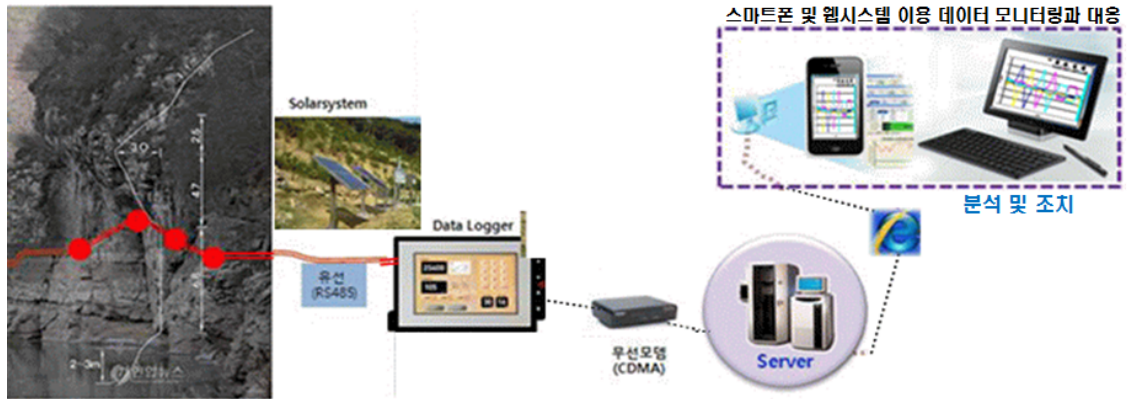
- 반구대암각화 3D스캔(2004. 4.~5.)
- 반구대암각화 현황조사(2008. 8.)
  - 기존 3D스캔 데이터 및 사진자료 비교
  - 대체로 변화 없으나 일부 박락 및 균열 확인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구
- 반구대암각화 보존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현지조사(2011. 7.~8.)
  - 구조 모니터링 추진 현황 점검

### 라. 상시계측시스템 설치계획

- 시스템 특징
  - 1년의 대부분이 물속이 잠겨 있는 현황을 감안, 외기 및 수중에서 동시 관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설치
  - 전력유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솔라시스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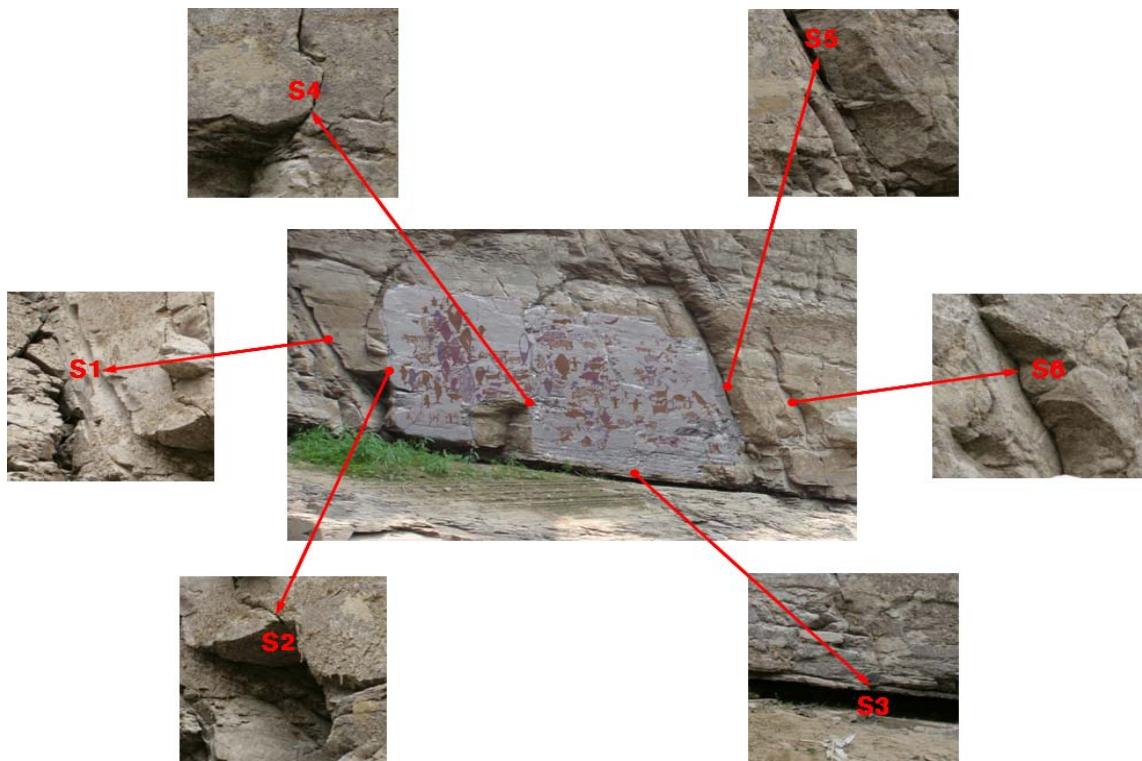
- 스마트폰 및 웹서비스시스템을 이용한 상시계측데이터를 연구소 및 관련 기관에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계측시스템 계통도



○ 계측센서 설치 예정 위치

- 도상이 없는 주요 절리면 6개소





**마. 향후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주기적 구조 모니터링 및 수집데이터 분석(월별, 분기별)
- 향후 반구대 암각화 안전관리 방안마련의 기초자료 제공
- 문화재 안전진단 및 관리시스템 구축기술 확보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

## 48. 창덕궁 부용정 보수 공사 계획 보고

### 가. 보고사항

지붕을 해체하여 보수하고 있는 보물 「창덕궁 부용정」에 대한 보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나. 보고사유

- 「창덕궁 부용정」은 지붕의 누수로 목부재의 부식이 심하고, 건물이 한쪽 방향으로 기우는 등 보수정비가 시급하여 보물로 지정('12. 3. 2)되기 이전인 2011년 10월부터 보수를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합각벽 및 장식기와 설치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 및 고증자료를 참고하여 원래의 모습과 같이 보수·복원하고자 보고하는 것임.

### 다. 보고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창덕궁관리소장)
- (2) 대상문화재 : 창덕궁 부용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번지 창덕궁 내
  - 지정일 : 2012. 03. 02.
- (3) 보고내용 : '창덕궁 부용정'의 합각벽 복원, 절병통 및 취두 설치 계획
  - 현재 전벽돌로 설치된 합각벽을 『조선고적도보』에 기재된 판벽의 형태로 복원
  - 「동궐도」에 나타난 모습대로 절병통(1개소) 및 취두(4개소) 추정 복원
    - 절병통 : 높이 120~150cm, 폭 45~58cm, 토제
    - 취두 : 높이 약 60cm, 폭 약 50cm, 토제

- : \_\_\_\_\_
- : 245,706,000
- : 2011. 10. 14 ~ 2012. 09. 17
- : ( ) ( : )
- :
- 
- 
- 
- : , ,

**라. 검토의견 (공능문화재과)**

- 관계전문가의 자문, 고증자료 등에 근거하여 금회 보수 시 지붕의 합각벽과 절병통 및 취두를 원래의 모습과 같이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참고사항(관계전문가 검토의견)**

- 제1차 자문회의 ('12.03.27 / 자문위원 ○○○, ○○○, ○○○)
  - 고증자료 및 인근 건축물 합각 형태를 토대로 판벽으로 복구토록 함.
- 제2차 자문회의 ('12.04.10 / 자문위원 ○○○, ○○○, ○○○, ○○○, ○○○)
  - 절병통 및 취두를 고증을 통해 동꺽도의 모습으로 복원토록 함.
  - 강회다짐은 보토에 일부 강회를 섞어 시공함.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접수 7명

## 4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결과 보고

###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소재 보물 「서울 문묘 및 성균관」 주변 석전대제 상시공연 현상변경 허가 신청 등 9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허가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검토의견)	처리 일자
소계		9건		
서울 문묘 및 성균관<대성전 ·동무·서무·삼 문·명륜당> (보물 제141호)	서울 종로 (성균관)	○ 석전대제 상시공연 - 명륜당 월대 및 마당에 제상과 악기 및 음향기기 등 진설 - 동무에 행사기간 동안 악기 보관	허 가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하도록 함.)	'12.05.07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보물 제584호)	전남 구례 (구례군수)	○ 보건진료소 창고 증축 - 건축면적 : 32.94㎡ -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허 가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하도록 함.)	'12.05.03
장흥 보림사 남·북 삼층석탑 및 석등 (국보 제44호)	전남 장흥 (장흥군수)	○ 화장실 보수 - 화장실 변화 보수 및 내부 수리	허 가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하도록 함.)	'12.05.10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보물 제833호)	경북 경주 (기림사 주지)	○ 요사채 신축 허가사항 변경 - 변경내용 : 겹처마→홀처마 ※ '11년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결과 허가 통지된 건	변경 허가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하도록 함.)	'12.04.20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검토의견)	처리 일자
경주향교 대성전 (보물 제1727호)	경북 경주 (경주시장)	○ 외래수종 제거 및 명륜당 마루보수 - 수목제거: 잣나무 11주, 가이즈까향나무 26주 - 수목가지치기 : 느티나무 5주 - 명륜당 마루보수 : 마루 청판 30% 해체·보수, 부재10% 교체	<b>조건부 허가</b>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12.04.24.
경주 석굴암 석굴 (국보 제24호)	경북 경주 (경주국립공 원사무소장)	○ 낙석방지책 설치 - 정비구간: 불국사~석굴암 탐방로 2.2km 중 위험지점 4개소 설치 - 정비내용 : 50m×4개소 → 200m 낙석방지책(H빔, PVC코팅망) 설치	<b>허 가</b> (기 제출된 계획서와 같이 시행토록 함.)	'12.05.03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보물 제42호)	전북 남원 (○○○)	○ 단독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 - 주요외장재 사이딩 마감→보석블럭(화강석) - 지붕마감재 라파즈 기와→칼라아스팔트 싱글 ※ '12년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결과 허가 통지된 건	<b>변경 허가</b>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하도록 함.)	'12.04.27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보물 제465호)	경북 영천 (신흥사 주지)	○ 종각 신축 허가사항 변경 - 허가기간변경 · 기존 : '11.4.27~12.4.26 · 변경 : '12.4.26~'13.4.25 ※ '11년 제2차 건축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결과 허가 통지된 건	<b>변경 허가</b> (제출한 계획서와 같이 시행하도록 함.)	'12.04.27
부산 범어사 대웅전 (보물 제434호)	부산 연제 (푸른도시가꾸 기사업소장)	○ 사업내용 : 데크설치 - 목적 : 범어사~금정산성 간 등 산로 정비사업 일환 - 멀바우 재질 데크 1개소 설치 (약 9㎡)	<b>허 가</b>	'12.05.10

####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 원안접수 7명